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 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 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碩士學位論文

민간어린이집의 실태 및 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



漢城大學校 教育大學院

幼兒教育專功

趙美子

碩士學位論文指導教授金璟培

민간어린이집의 실태 및 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

2010年 2月 日

漢城大學校 教育大學院

幼兒教育專功

趙美子

碩士學位論文 指導教授金璟培

민간어린이집의 실태 및 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

위 論文을 敎育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10年 2月 日

漢城大學校 教育大學院

幼兒教育專功

趙美子

趙 美 子의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2010年 2月 日

審査委員長 _____(인) 審査委員 _____(인)

목 차

I. 서 론 ······	··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및 문제	3
3. 연구의 내용	3
4. 연구의 제한점	3
Ⅱ. 이론적 배경	4
1. 보육시설의 개념	4
2. 보육시설의 기능	6
3. 우리나라 보육시설	
1) 우리나라 보육시설 변천	8
2) 우리나라 보육시설의 실태	10
3) 보육시설 운영의 요인	22
4) 보육시설의 행·재정 요인	25
4. 선행 연구의 고찰	26
Ⅲ. 연구방법	29
1. 연구대상	29
2. 연구도구	31
3. 자료처리	32
Ⅳ. 결과 분석 및 해석	33
1. 교사의 배경변인에 따른 민간어린이집 교육프로그램의 복지요인 …	33
2. 교사의 배경변인에 따른 민간어린이집 행·재정 요인	41
3. 교사의 배경변인에 따른 민간어린이집 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점 "	42

V. 요약 및 결론	51
1. 요약	51
2. 결론	53
3. 제언	54
참고문헌	55
부록 I	60
부록 Ⅱ	65
ABSTRACT	67

표 목 차

< 丑	1>	보육시설 및 보육아동 현황 10
< 丑	2>	보육료 지원대상자 선정 지침
< 丑	3>	정부지원 시설 보육료 단가 12
<丑	4>	정부 미 지원 시설 보육료 단가 13
<丑	5>	두 자녀 이상 보육료 가구원수별 소득 인정액 기준 14
<丑	6>	두 자녀 이상 차등보육료(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단가) … 15
<丑	7>	만 5세아 무상보육료 가구원수별 소득 인정 액 기준 16
< 丑	8>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관련) 17
< 丑	9>	시간 연장 보육료 지원 단가 기준 21
く丑	10>	연구 대상 교사의 개인배경 29
く丑	11>	연구 도구의 하위 변인과 신뢰도31
く丑	12>	교사의 개인적 배경변인에 따른 보호변인의 차이검증 33
く丑	13>	교사의 개인적 배경변인에 따른 영양 변인의 차이검증 35
く丑	14>	교사의 개인적 배경변인에 따른 건강 변인의 차이검증 37
く丑	15>	교사의 개인적 배경변인에 따른 안전 변인의 차이검증 39
く丑	16>	교사의 개인적 배경변인에 따른 행ㆍ재정 변인의 차이검증 … 41
く丑	17>	교사의 개인적 배경변인에 따른 보육시설 운영상 문제점 43
く丑	18>	교사의 개인적 배경변인에 따른 보육시설 교사확보 측면의
		문제점45
く丑	19>	교사의 개인적 배경변인에 따른 공적 재정에 대한 불만족 사항
		47
く丑	20>	교사의 개인적 배경변인에 따른 보육 시스템의 행정적 지원 및
		개선 사항49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의 보육은 해방 이전에는 전적으로 가족, 특히 부모의 책임으로 여겼으며 그 중 양육은 어머니 담당이었다. 해방 이후부터 1960년 까지는 6.25전쟁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고아사업이 전개되어서 전쟁고아나 기아, 미아 등 아동에 대한 각종 수용, 보호시설이 주로 외국인 원조에 의해설치 및 운영되었다.

이를 시대적으로 살펴보면, 1960년대 후반기에는 사회가 안정되기 시작하면서 고아의 감소 경향으로 특수아동에 대한 복지사업과 근로여성을 위한 탁아사업으로 아동복지사업의 근간을 이루어 활발히 전개되어 왔다. 1982~1990년은 유아교육진흥법이 확립된 시기라고 할 수 있는 데 1982년에는 심신장애자복지법 및 유아교육진흥법을 근로자 자녀를 위한 직장탁아소를 설치하였다(이근주, 2004). 영유아보육법 시기라고 할 수 있는 1991~2004년에는 영유아보육법을 제정·공포하였고, 탁아에서 보육기능을확대하였다. 이는 산업화의 진전으로 보육수요가 급증하였고 우리나라 보육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게 되었다. 2004년 이후부터는 전면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제정을 계기로 보편주의 보육이념의 강화, 아동권리의 기본원칙천명, 보육의 범정부적 정책과제 설정, 보육의 공공성 강화, 보육의 전문성강화, 보육행정 및 운영에 있어서 수요자의 참여 활성화 등이 생겨났다. 2004년 6월 주관 부처가 보건복지부에서 여성가족부로 이관되었다. 2005년부터 보육교사 국가자격증제를 도입하였고 보육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자 보육시설평가인증제를 실시하였다.

현재 우리나라는 급격한 산업화로 인하여 사회 구조적 변화를 가져와 가족해체, 핵가족화, 취업모의 증가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점차적으로 증가되고 있다. 또한 기혼여성의 취업률은 전체여성 경제 활동 참가인구의 75.5%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핵가족화 추세

로 자녀수가 감소하여 가정 내에서 어린이 상호 간에 집단작용을 할 수 있는 형제가 적거나 전혀 없게 되는 경향이 많아짐에 따라 부모들은 자녀의 사회성 발달 등을 위해 자녀가 또래와의 집단 경험을 할 수 있기를 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보육시설에 대한 요구가 급증하고 있다.

영유아에 대한 보육시설은 형태에 따라 국공립보육시설, 법인보육시설, 민간 개인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부모협동보육시설, 직장내보육시설로 구 분할 수 있으며, 2008년 전국 보육시설은 3만 3천여 개로 1999년 1만 9천 여 개에 비해 78.5% 증가했다. 이 중 국공립보육시설은 40.5%가 증가하고 법인보육시설은 오히려 25.8%로 감소하였고 반면에 민간보육시설은 66.1%, 가정보육시설은 131.6%, 직장보육시설은 69.0%가 증가하였다(이근 주, 2004). 이상에서 보육시설의 형태별 비율을 살펴보면, 전체 시설 수 중, 국공립보육시설과 법인보육시설은 9.9%, 국공립보육시설과 법인보육시 설의 현원은 전체 보육아동 현원의 20.9%, 국공립 보육시설의 전체교사는 국공립 및 민간시설 전체 교사의 18.0%에 해당한다. 현재 구로구 보육시 설 현황을 예를 들면, 국공립어린이집이 48개에 불과한 반면 민간어린이집 은 138개, 가정어린이집은 148개나 있어 민간어린이집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 증명된다. 살펴 본 내용과 같이, 국공립보육시설의 증 가율에 비해 민간보육시설의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보육시설 및 보육 아동 현원과 종사자도 민간시설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동안 어 린이집이 양적ㆍ질적인 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이 있어 아동 보육에 대 한 어린이집의 역할이 크게 증대해 온 순기능도 있었지만, 국공립 어린이 집의 국가 지원은 원할한 반면에 민간어린이집의 지원은 미약할 뿐만 아 니라 여러 가지 제약이 뒤따르고 있어 그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 러므로 민간어린이집 운영 실태를 조사 연구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어린 이집 운영 개선 방안을 모색해 보는 데에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2. 연구의 목적 및 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민간어린이집의 운영 실태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여, 보육의 질적 향상에 도움이 되는 개선점을 파악함으로써 민간어린이집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한 연구의 문제는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민간어린이집 교육프로그램의 복지요인(보호, 영양, 건강, 안전)은 교사의 배경변인(성별, 연령, 학력, 전공, 경력, 자격증 유형)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민간어린이집 교육프로그램의 행·재정 요인에 대하여 교사와 시설장 배경변인(성별, 연령, 학력, 전공, 경력, 자격증 유형)에 따라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민간어린이집 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점의 방향은 어떠한 가?

3.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갖는다.

- 1. 본 연구는 표집대상이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역에 국한하였기 때문에 이 연구결과를 일반화시키기는 어렵다.
- 2. 인식도 조사는 질문지에만 의존하였으므로 질문지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심층적인 분석이 어려웠다.

Ⅱ. 이론적 배경

1. 보육시설의 개념

보육시설이란 의미는 국공립 및 민간·가정어린이집을 다 포함하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 보육시설은 민간어린이집만을 지칭한다. 보육시설의 정의를 살펴보면, 세계보건기구(WHO)는 '보육시설은 가정에서 정상적인 양육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하루 중의 일정한 시간 동안 가정을 떠나서 보호양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곳'이라고 정의하고 프레드릭슨은 보육시설이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낮 동안 그들의 친부모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 의해 보호 받아야 할 아동들에게 주어지는 시설이라고 정의 하였다(Fredericksen, 1948).

사회복지 사전에는 보육시설의 대상 아동은 주로 0세 아동이나 보호 능력이 없는 시민의 자녀로서, 낮 동안 다른 사람의 보호를 받아야 할 아동들을 보호하는 곳 이라고 정의하였다(대구대학교 사회복지사전, 1985). 또한 대한민국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서 보육시설이라 함은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 기타 사정으로 영유아를 보호하기 어려운 경우에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호하는 시설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상의 정의를 통해서 볼 때, 보육시설의 1차적 기능은 아동의 양육, 보호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보육대상이 성장 발달과정에 있어서 다음 단계의 성장 발달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 시기에 속해 있는 아동들이므로 이들에 대한 교육을 소홀히 할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1960 년대 헤드스타트 프로그램(Headstart program)이 등장한 이후에는 단순한 보호뿐만 아니라. 교육활동을 강화한 포괄적 프로그램이 행해지고 있다. 따라서 보육시설은 단순한 보호라는 개념보다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가정에서 보호하기 어려운 영아 및 유아를 심신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가정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라 할 수 있다(영유아보육법, 보육사업안 내; 2001). 영유아의 인격 형성이나 행동 발달의 기준을 설정할 권리와 의무는 일차적으로 부모에게 있다. 그러나 영유아의 보호와 양육 그리고 교육에 대한 우선적인 권리와 책임을 전적으로 부모가 맡기 어려울 때에는 타인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않을 수 없다. 보육시설은 이와 같이 '부모가자녀교육의 책임을 감당할 수 없어 아동 양육이 위급하거나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될 우려가 있을 때 부모와 가정을 대신해서 보호·양육 하는 곳이라 할 수 있다(최미현 외, 1996).

이와 같은 의미를 갖는 보육시설은 특히 산업혁명 이후에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즉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나타난 여성 노동력의 사회적 요구는 영유아의 보호와 양육이 단순한 가정문제가 아니라 사회문제임을 확인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그 결과 국가적 차원에서 이러한 역할을 담당할 사회기관으로 보육시설이 등장하게 되었다. 그러나 초기의 보육사업은 자선사업적 측면에서 주로 저소득층 가정의 영유아를 수용, 보호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었다. 그러던 것이 산업의 발전에 따라 여성의 사회 참여가 급격히 증가되고 또한 그 영역이 다양해짐에 따라 서비스의 대상은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고소득층 자녀에게까지 확대되기에 이르렀다(권순영, 1996).

우리나라에서도 여성의 사회 참여가 확대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1991년 영유아보육법을 제정·공포하였다. 이 법에서는 보육시설의 목적과 역할에 대해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다. 즉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르면, '보육시설에서의 교육은 영유아의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지적 및 언어적 발달에 기여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고 유능하고 존중받는 사람으로서 자기존중감을 발달시킬 수 있도록 도와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보육시설의 등장 배경과 설립 정신 그리고 법적 측면을 고려해 본다면, 보육시설의 궁극적 목적은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자의 사회적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여 가정생활의 질적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영유아의 성장과 학습을 위해 요구되는 건강, 사회, 표현, 언어, 탐구 생활에 능력과 태도를 기르도록 도와주는 곳이라고 할 수 있다(보건복지부, 2007). 보육시설은 영유아가 가정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사회가 조직적으로 개입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작용하며 보

호와 교육을 합리적으로 조화시켜 영유아가 건강한 사회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보육은 영유아의 교육과 보호는 물론, 가족 전체의 건강과 영양 그리고 사회적이고 심리적인 봉사를 제공하는 활동이라 할 수 있다.

2. 보육시설의 기능

일반적으로 보육시설의 기능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지적 할 수 있다. 첫째, 보육시설은 보호의 기능으로 영아 및 유아에 대하여 심신의 세심한 보호를 통하여 가정과 같은 분위기를 조성하여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유도해야 한다.

둘째, 보육시설의 교육의 기능은 영유아의 신체적, 사회적, 지적 및 언어적 발달에 기여할 수 있는 경험 제공 및 자아 존중감을 발달시키며 학령 전 영유아의 학령 아동에게 필요한 보육계획을 수립하여 보호, 양육할뿐 아니라 여러 가지 올바른 생활 수행 능력을 제공해 주는 역할도 수행해야 한다. 그러한 생활 수행 능력 중 건강 생활은 기본적인 감각·운동기능과 신체조절 능력을 기르고,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습관을 가지게 하여영유아의 심신을 균형 있게 하는 데 있고, 사회생활은 기본생활 습관과 자기조절 능력을 기르고, 사회적 지식과 태도를 익히게 하여 자신과 다른 사람을 존중하며 더불어 생활할 수 있도록 하며, 표현생활은 영유아의 생각과 느낌을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자발적·창의적으로 표현하도록 함으로써정서적 안정과 심미감을 기르도록 한다. 그리고 언어생활은 말과 글에 관심을 가지게 하며, 기초적인 언어 능력을 신장하여 말과 글에 관심을 가지고 탐구하도록 하여, 합리적인 문제해결 능력과 태도를 기르도록 한다.

셋째, 보육시설은 충분하고 균형있는 영양 공급 및 바른 식습관 지도로 정상적인 발육을 이끌어 내며, 급식은 정상적인 발달에 필요한 영양을 충 분히 섭취할 수 있도록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에 의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넷째, 보육시설은 영유아의 신체적·정서적 건강을 위한 예방적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건강의 기능이란 신체적, 정서적 안녕 뿐만 아니라

고통, 결함, 질병으로부터의 해방으로 정의될 수 있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아직 성숙되지 못한 영유아의 건강 유지는 보육시설의 중요한 문제가 되므로 보육시설의 중요한 기능에 포함하지 않을 수 없다. 낮 동안보호자가 가정에서 영유아의 건강 상태를 살필 수 없거나 영유아가 장애를 가지고 있을 때, 또한 가정환경에 결함이 있을 때, 보육시설은 가정을 대신하여 건강을 유지하는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영유아복지의 증진을 촉진할 수 있다.

다섯째, 보육시설은 영유아 스스로가 자신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을 가지도록 지도해야 하며, 영유아들이 안전 기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안전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예를 들면, 교통 안전, 화재 안전, 폭발물 안전, 놀이 안전, 놀이기구 사용법, 일상용품 사용법, 기관내외의 위험 요소와 주의 사항 등이 포함된다(임재택, 1985).

여섯째, 부모에 대한 서비스 기능으로 부모 참여, 부모 교육, 부모들의 보육과정이 관찰 등을 통하여 보육의 효과를 제고한다. 보육시설은 부모회 의나 개별상담을 통해 자녀교육, 가정의 육아상담, 조언, 자모회 등을 통한 부모 상호 간의 육아방법을 교류하고 보육프로그램의 구성과정이나 운영 과정에 부모 참여를 유도하여 일반교양 등에 관한 정보를 얻게 함으로써 보호자에 대한 사회 교육적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일곱째, 보육시설은 지역사회와 교류가 잘 이루어져야 하며 지역사회인사의 보육활동 참여, 지역사회 시설의 보육시설로의 활용, 보육시설의지역사회 시설로의 활용 등을 통하여 효율적인 보육 프로그램 운영에 기여해야 한다. 따라서 보육시설은 영유아를 매개로 하여 지역주민들이 협동, 단결할 수 있는 장으로 보육시설을 개방하여 지역사회 주민의 조직력을 강화하고, 나아가 지역사회의 경제적 사회적 발달을 위한 제반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복지증진을 도모할 수 있다(보건복지부, 2001).

이상과 같이 보육시설은 영유아가 건강한 사회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 도록 돕는 보호, 교육, 영양, 건강, 안전의 기능, 부모에 대한 서비스 기능, 지역사회와의 교류 기능 등을 복합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기본 원칙을 가 지고 있다.

3. 우리나라 보육시설

1) 우리나라 보육시설 변천

우리나라의 보육사업은 1921년 서울에서 태화기독교사회관이 탁아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시작되었다. 1961년 아동복리법이 제정·공포됨으로써 탁아사업은 종래의 구빈 사업적 성격을 벗어나 아동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그 성격이 변화 및 발전되어 왔다.

이후 정부는 1982년 유아교육진흥법을 제정하여 기존의 어린이집, 새마을 협동유아원 및 농번기 탁아소를 새마을 유아원으로 흡수·통합하여 운영해왔다. 그러나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 증가 및 가족구조의 핵가족화에 따라 보육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기존 새마을 유아원의 보육기능은 미흡하고 보육시설 또한 절대 부족하여 취업 여성의 자녀양육 문제가 큰 사회적 문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87년 12월 노동부에서는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직장탁아 제도를 도입하였고, 1989년 9월 보건복지부에서는 아동복지법에 의한 보육사업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영유아보육에 관련된 사업이 여러 부처에서 제각기 독자적으로 관리·운영됨에 따라 정부 재정의 비효율적 투자는 물론영유아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육을 실시하는 데 어려움이 노출되었다.

이에 여성단체 등의 보육에 관한 독립된 입법 요청에 따라 국회에서는 보육사업의 통합·일원화를 내용으로 한『영유아보육법』이 의원입법으로 추진되어 1991년 1월『영유아보육법』을 제정하고, 1991년 8월 시행령 및시행규칙을 제정하였다. 영유아보육법령에는 보육 산업 주관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일원화하였고, 종전의 단순 "탁아" 사업에서 보호와 교육을 통합한 "보육"사업으로 확대·발전하게 되었다. 이후 보건복지부에서는 10차례의법령 개정과 보육시설 확충계획을 통하여 늘어나는 보육수요에 대응하고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으며, 2004년 1월 29일 영유아보육법의 전면 개정안이 공포됨으로써 보육서비스의 다양화와 질적 수준 향상, 그리고 보육에 대한 공적 책임 강화를 통해 보육 사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2004년 6월 12일 부터 영유아 보육사무가 보건복지부에서 여성부로 이관되었으며, 2004년 1 월 29일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의 시행(2005. 1. 30)에 따라 보육서비스의 질 적 수준 향상과 보육의 공공성 강화 등을 통해 보육 사업이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2005년 12월 영유아보육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으로 시설장의 국자자격증제 도입과 보육시설운영위 원회 설치 의무화로 보육시설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게 되었고. 보육시설 설치 사전 상담제를 실시하여 시설 설치에 따른 민원 불편을 해 소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2006년 11월 10일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표준보육과정을 마련함으로써 영유아가 건강하고 안전하며 바르게 생활하는 데 필요한 내용과 신체, 사회, 언어, 인지, 정서 등 전인 적 발달을 위해서 영유아가 갖춰야 할 지식, 기술, 태도를 제시하는 등 영 유아가 조화로운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될 수 있도록 보육환경의 질을 높 였다. 2007년 7월 개정된 영유아보육법(2008. 7. 28 시행)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의 유용한 경우 보육시 설장의 자격 정지 및 자격 취소가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영아 또는 장 애아가 주로 이용하는 보육시설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보육시설은 운영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보육시설 정원의 감축 또는 아동모집의 정치 조 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구체적 기준을 여성가족부령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2008년 1월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는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그 보육시설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한 자에게 행한 행정제재 처분의 설정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게 승계되며 행정체재 처분이 절차가 진행 중인경우에도 그 처분 절차가 승계되도록 하였다.

2) 우리나라 보육시설의 실태

(1) 영유아 및 시설 보육현황

우리나라의 보육아동 현황과 보육시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육 연령 아동 현황을 고찰하면, 2007년 6월 영유아 보육법 상 보육대상연령 아동(주민등록상 만5세 미만 아동)은 약283만 명이며,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은 37.5%인 1,062,415명(2007년 6월 현재) 이다. 전체 영아(0~2세)의 26.6%와 유아의 42.8%가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07).

둘째, 보육시설 및 보육아동 현황을 알아 보면, 1990년 말 1,919개 보육시설에서 4만 8천명의 아동을 보육하고 있었으나, 2007년 6월말 현재 29,823개 보육시설에서 106만2천명의 아동이 보육을 받고 있다. (방과 후 아동 20,653명 포함). 보육시설 및 보육아동현황은 〈표 1〉 과 같다.

〈표 1〉 보육아동 및 보육시설 현황

7 11	11			τ	민간보육			-l -l - 1 - 0	2] 2 <u>]</u> .
구 분	계	국공립	법인	소 계	법인 외	개 인	무모엽동	가정보육	직장
시설수	29,823	1,670	1,461	13,958	1,034	12,924	62	12,360	312
(개소)	(100)	(5.6)	(4.9)	(46.8)	(3,5)	(43.3)	(0.3)	(41.4)	(1.0%)
아동수	1,062,719	117,126	116,665	651,561	57,795	593,766	1,371	160,599	15,093
(명)	(100)	(11.0)	(11.0)	(61.3)	(5.4)	(55.9)	(0.2)	(15.1)	(1.4)
종사 자수	162,719 (100)	15,181 (9.3)	15,967 (9.8)	88,487 (54.4)	8,097 (5.0)	80,390 (49.4)	314 (0.2)	40,155 (24.7)	2,615 (1.6)
(명)							,		

^{*} 자 료: 보건복지부(2008). 보육사업안내.

(2) 보육예산지원

보육예산의 차등보육료 지원 대상(만0세~4세)에는 법정 저소득층 아동 지원과 기타 차등 보육료 지원 아동 그리고 5층 초과 계층 아동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법정 저소득층 아동을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 의한

수급권자 및 그 가구원(의료, 교육, 자활급여 특례수급권자 포함)『한 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모·부자 가정 아동, 아동복지법 제16조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만3~4세 아동 그러나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만0~만2세 아동은 지원이 불가능하다. 여성폭력피해자 보호 시설(가정, 성폭력), 성매매피해자 지원 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 자녀, 모·부자(일시)보호 시설 등에 입소한 자의 동반 자녀와 미혼 모자 공동생활 가정에 입소한 자의 자녀로 구분 되어 있다.

둘째, 기타 차등 보육료 지원 아동을 보면 『보육료 지원대상자 선정 지침』에 따라 기타 차등보육료 지원 대상 보육료 책정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제2호 [별표 2] 제4호 다목에 의한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있는 가구는 2층으로 본다.

셋째, 5층 초과 계층 아동 보육료 지원 대상 소득기준을 보면, 초과(5층 초과)하는 만0~2세 아동이 정부 미 지원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보육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 아동(한국 국적이 없는 아동)에 대한 보육료 일부 지원도 가능하다. 보육료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은 <표 2>와 같다.

〈표 2〉 보육료 지원대상자 선정 지침

구분	3인까지	4인	5인	6인
1층		국민기초생	활수급자등	
2층	123만원 이하	151만원 이하	178만원 이하	205만원 이하
 3층	178만원 이하	199만원 이하	210만원 이하	230만원 이하
 4층	250만원 이하	278만원 이하	294만원 이하	322만원 이하
5층	357만원 이하	398만원 이하	420만원 이하	460만원 이하

- 7인 이상 가구 : 6인 가구 기준으로 1인 증가시마다 30만원씩 증가
- 가구원수(가구주 포함)별 소득 인정 액 기준(2009년 6월 까지)
- * 자 료: 보건복지부(2009). 보육사업안내, p. 226.

(가) 정부 지원 단가

정부 지원시설, 정부미지원시설, 직장보육시설(공공기관 또는 고용보험 기금에서 운영비를 지원받는 시설에 한함)에 관한 내용은 〈표 3〉,〈표 4〉와 같다.

〈丑	3>	정부지원	시설	보육료	단가	-

(T)	ㅏ위	٠ .	원)	
(5	1		TH 1	

구분 지원 대상 비율 연령 종일보육료 야간보육료 보유료 만0세 383,000 383,000 574,500 만1세 337,000 337,000 505,500 만2세 278,000 278,000 417,000 만3세 191,000 191,000 286,500 만4세 172,000 172,000 258,000 만1세 337,000 337,000 505,500 만4세 172,000 172,000 258,000 만1세 337,000 337,000 505,500 만1세 337,000 337,000 505,500 만2세 278,000 278,000 417,000 만3세 191,000 191,000 286,500 만4세 172,000 172,000 258,000 152,800 259,200 154,800 152,800 250,200 154,800 166,800 166,800 250,200 154,800 174,900 174,900 172,350 154,800 151,600 57,300 85,950 156,00 77,400	(11)	5/ 성무시된	기열	모팍묘 인	/r	(ゼガ・ゼ/
변정저소득층 100% 만1세 383,000 383,000 574,500 만1세 337,000 337,000 505,500 만2세 278,000 417,000 만3세 191,000 191,000 286,500 만4세 172,000 172,000 258,000 만1세 337,000 337,000 505,500 만4세 172,000 172,000 258,000 만1세 337,000 337,000 505,500 만1세 337,000 337,000 505,500 만1세 337,000 337,000 505,500 만1세 337,000 191,000 286,500 만2세 172,000 172,000 258,000 만4세 172,000 172,000 258,000 만1세 269,600 269,600 404,400 만1세 269,600 269,600 404,400 만2세 137,600 137,600 206,400 만3세 152,800 152,800 229,200 만4세 137,600 137,600 206,400 만1세 202,200 202,200 333,600 만1세 202,200 202,200 333,600 만1세 202,200 202,200 333,600 만2세 114,600 114,600 171,900 만4세 103,200 103,200 154,800 만1세 101,100 101,100 151,650 만2세 83,400 83,400 125,100 만3세 57,300 57,300 85,950	구분	지원 대상		연령	종일보육료	야간보육료	
변경제소득층 100% 만2세 278,000 278,000 417,000 만3세 191,000 191,000 286,500 만4세 172,000 172,000 258,000 만4세 172,000 337,000 505,500 만4세 172,000 172,000 258,000 만4세 137,000 337,000 505,500 만1세 337,000 337,000 505,500 만1세 337,000 337,000 505,500 만1세 337,000 191,000 286,500 만2세 172,000 172,000 258,000 만4세 172,000 172,000 258,000 만4세 172,000 172,000 258,000 만1세 269,600 269,600 404,400 만2세 222,400 222,400 333,600 만3세 152,800 152,800 229,200 만3세 152,800 152,800 229,200 만4세 137,600 137,600 206,400 만3세 137,600 137,600 206,400 만2세 229,800 344,700 만2세 202,200 333,600 만3세 114,600 171,900 만3세 114,600 171,900 만4세 103,200 103,200 154,800 만2세 103,200 103,200 154,800 만2세 101,100 101,100 151,650 만3세 57,300 57,300 85,950		, , , ,	비율			, _ ,	보육료
1층 법정저소득층 100% 만2세 278,000 278,000 417,000 만3세 191,000 191,000 286,500 만4세 172,000 172,000 258,000 만4세 172,000 333,000 574,500 만1세 337,000 337,000 505,500 만2세 278,000 417,000 만3세 191,000 191,000 286,500 만4세 172,000 172,000 258,000 만2세 269,600 404,400 306,400 459,600 만3세 152,800 152,800 229,200 만4세 137,600 137,600 206,400 만4세 137,600 137,600 206,400 만2세 229,800 344,700 만1세 202,200 202,200 333,600 만2세 103,200 154,800 만4세 103,200 103,200 154,800 만4세 103,200 103,200 154,800 만2세 101,100 101,100 151,650 만3세 57,300 57,300 85,950				만0세	383,000	383,000	574,500
만3세 191,000 191,000 286,500 만4세 172,000 258,000 만4세 172,000 383,000 574,500 만0세 383,000 387,000 505,500 만1세 337,000 278,000 417,000 만2세 278,000 278,000 417,000 만3세 191,000 191,000 286,500 만4세 172,000 172,000 258,000 만4세 172,000 172,000 258,000 만1세 269,600 269,600 404,400 만2세 222,400 222,400 333,600 만3세 152,800 152,800 229,200 만4세 137,600 137,600 206,400 만4세 137,600 137,600 206,400 만1세 202,200 202,200 333,600 만1세 202,200 202,200 333,600 만2세 106,800 166,800 250,200 만3세 114,600 171,900 만4세 103,200 103,200 154,800 만1세 103,200 103,200 154,800 만1세 101,100 101,100 151,650 만2세 101,100 101,100 151,650 만2세 101,100 101,100 151,650 만2세 83,400 83,400 125,100 만3세 57,300 85,950				만1세	337,000	337,000	505,500
변석세 172,000 172,000 258,000 만0세 383,000 574,500 만1세 337,000 337,000 505,500 만2세 278,000 278,000 417,000 만3세 191,000 191,000 286,500 만4세 172,000 172,000 258,000 만4세 172,000 172,000 258,000 만4세 172,000 172,000 258,000 만4세 172,000 172,000 258,000 만1세 269,600 269,600 404,400 만2세 222,400 222,400 333,600 만3세 152,800 152,800 229,200 만4세 137,600 137,600 206,400 만4세 137,600 137,600 206,400 만1세 202,200 222,800 344,700 만1세 202,200 202,200 333,600 만2세 106,800 166,800 250,200 만3세 114,600 171,900 만4세 103,200 103,200 154,800 만1세 103,200 103,200 154,800 만1세 101,100 101,100 151,650 만2세 101,100 101,100 151,650 만3세 57,300 85,950	1층	법정저소득층	100%	만2세	278,000	278,000	417,000
2층 최저생계비의 120% 수준 100% 만1세 383,000 383,000 574,500 만1세 337,000 337,000 505,500 만2세 278,000 417,000 만3세 191,000 191,000 286,500 만4세 172,000 172,000 258,000 만4세 172,000 172,000 258,000 만1세 269,600 269,600 404,400 만2세 222,400 222,400 333,600 만4세 137,600 152,800 229,200 만4세 137,600 137,600 206,400 만1세 202,200 229,800 344,700 만1세 202,200 202,200 333,600 만1세 202,200 202,200 333,600 만2세 103,200 166,800 250,200 만3세 114,600 171,900 만4세 103,200 103,200 154,800 만1세 101,100 101,100 151,650 만2세 1000% 만3세 101,100 101,100 151,650 만2세 83,400 83,400 125,100 만3세 57,300 85,950				만3세	191,000	191,000	286,500
2층 최저생계비의 120% 수준 100% 만2세 278,000 278,000 417,000 만3세 191,000 191,000 286,500 만4세 172,000 172,000 258,000 만4세 172,000 172,000 258,000 만4세 172,000 306,400 459,600 만1세 269,600 269,600 404,400 만2세 222,400 222,400 333,600 만3세 152,800 152,800 229,200 만4세 137,600 137,600 206,400 만4세 137,600 137,600 206,400 만1세 202,200 202,200 333,600 만1세 202,200 202,200 333,600 만2세 202,200 202,200 333,600 만2세 103,200 154,800 만4세 103,200 103,200 154,800 만1세 101,100 101,100 151,650 만2세 101,100 101,100 151,650 만2세 83,400 83,400 125,100 만3세 57,300 85,950				만4세	172,000	172,000	258,000
2층 120% 수준 100% 만2세 278,000 278,000 417,000 만3세 191,000 191,000 286,500 만4세 172,000 172,000 258,000 만4세 172,000 172,000 258,000 만1세 269,600 269,600 404,400 만2세 222,400 222,400 333,600 만3세 152,800 152,800 229,200 만4세 137,600 137,600 206,400 만4세 137,600 137,600 206,400 만1세 202,200 229,800 344,700 만1세 202,200 202,200 333,600 만2세 202,200 333,600 만2세 114,600 114,600 171,900 만4세 103,200 103,200 154,800 만1세 101,100 101,100 151,650 만2세 100% 만2세 101,100 101,100 151,650 만2세 100% 173,300 85,950				만0세	383,000	383,000	574,500
2층 120% 수준 100% 만2세 278,000 278,000 417,000 만3세 191,000 191,000 286,500 만4세 172,000 172,000 258,000 만4세 172,000 306,400 459,600 만1세 269,600 269,600 404,400 만2세 222,400 222,400 333,600 만3세 152,800 152,800 229,200 만4세 137,600 137,600 206,400 만4세 137,600 137,600 206,400 만1세 202,200 202,200 333,600 만1세 202,200 202,200 333,600 만2세 202,200 202,200 333,600 만2세 166,800 166,800 250,200 만3세 114,600 114,600 171,900 만4세 103,200 103,200 154,800 만1세 101,100 101,100 151,650 만2세 101,100 101,100 151,650 만2세 103,400 83,400 125,100 만3세 57,300 85,950		최 거 새 케 비 이		만1세	337,000	337,000	505,500
보3세191,000191,000286,500만4세172,000172,000258,000모사 근로자 가 월평균 소득 50% 수준만0세306,400306,400459,600만1세269,600269,600404,400만2세222,400222,400333,600만3세152,800152,800229,200만4세137,600137,600206,400만1세202,200202,200333,600만1세202,200202,200333,600만1세202,200202,200333,600만2세166,800166,800250,200만3세114,600114,600171,900만4세103,200103,200154,800만4세103,200103,200154,800만1세101,100101,100151,650만2세83,40083,400125,100만3세57,30057,30085,950	2층		100%	만2세	278,000	278,000	417,000
도시 근로자 가 구 월평균 소득 50% 수준 80% 만2세 222,400 222,400 333,600 만3세 152,800 152,800 229,200 만4세 137,600 137,600 206,400 만4세 229,800 229,800 344,700 만1세 202,200 202,200 333,600 만1세 202,200 202,200 333,600 만2세 166,800 166,800 250,200 만3세 114,600 114,600 171,900 만4세 103,200 103,200 154,800 만1세 101,100 101,100 151,650 만2세 83,400 83,400 125,100 만3세 57,300 57,300 85,950		120% 午준		만3세	191,000	191,000	286,500
지 구			만4세	172,000	172,000	258,000	
지수		도시 근로자		만0세	306,400	306,400	459,600
3층 월평균 소득 50% 수준만2세 만3세 152,800 만4세222,400 152,800 152,800 229,200333,600 229,200 206,400도시 근로자 가 월평균 소득 70% 수준만0세 만2세 만2세 103,200202,200 202,200 103,200344,700 333,600 202,200 166,800 166,800 114,600 114,600 114,900도시 근로자 가 월평균 소득만0세 만4세 103,200114,900 114,900 114,900 114,900 114,900 114,900 114,900 1151,650 101,100 101,100 151,650 157,3005층만2세 원평균 소득83,400 만3세83,400 57,300125,100 57,300			80%	만1세	269,600	269,600	404,400
50% 수준 반3세 152,800 152,800 229,200 모시 근로자 가 구 월평균 소득 70% 수준 만0세 229,800 229,800 344,700 만1세 202,200 202,200 333,600 만2세 166,800 166,800 250,200 만3세 114,600 114,600 171,900 만4세 103,200 103,200 154,800 만4세 101,100 114,900 172,350 만1세 101,100 101,100 151,650 만2세 83,400 83,400 125,100 만3세 57,300 57,300 85,950	3층			만2세	222,400	222,400	333,600
보실세 137,000 137,000 200,400 보실제 137,000 200,400 보실평균 만에 229,800 229,800 344,700 만1세 202,200 202,200 333,600 만2세 166,800 166,800 250,200 만3세 114,600 171,900 만4세 103,200 154,800 만4세 103,200 114,900 172,350 만1세 101,100 101,100 151,650 만2세 83,400 83,400 125,100 만3세 57,300 57,300 85,950				만3세	152,800	152,800	229,200
소취 근로자 가 구 월평균 소득 70% 수준만1세202,200202,200333,600만2세166,800166,800250,200만3세114,600114,600171,900만4세103,200103,200154,800도시 근로자 가 구 월평균 소득만0세114,900114,900172,350만1세101,100101,100151,650만2세83,40083,400125,100만3세57,30057,30085,950		50% 수준		만4세	137,600	137,600	206,400
4층가 월평균 소득 70% 수준만1세202,200202,200333,600만2세166,800166,800250,200만3세114,600114,600171,900만4세103,200103,200154,800모사 근로자 가 월평균 소득만0세114,900114,900172,350만1세101,100101,100151,650만2세83,40083,400125,100만3세57,30057,30085,950		도시 근로자		만0세	229,800	229,800	344,700
4층 월평균 소득 70% 수준단2세 만3세166,800 114,600166,800 114,600250,200 171,900단4세103,200103,200154,800도시 근로자 가 월평균 소득만0세 만1세114,900 101,100172,350 101,100단2세83,400 만3세83,400 57,300125,100 57,300				만1세	202,200	202,200	333,600
70% 수준 반3세 114,600 114,600 171,900 만4세 103,200 103,200 154,800 도시 근로자 가 구 월평균 소득 만0세 114,900 114,900 172,350 만1세 101,100 101,100 151,650 만2세 83,400 83,400 125,100 만3세 57,300 57,300 85,950	4층		60%	만2세	166,800	166,800	250,200
도시 근로자 만0세 114,900 114,900 172,350 항등 만1세 101,100 101,100 151,650 만2세 83,400 83,400 125,100 만3세 57,300 57,300 85,950				만3세	114,600	114,600	171,900
5층 가 구 월평균 소득 30% 만1세 101,100 101,100 151,650 만2세 83,400 83,400 125,100 만3세 57,300 57,300 85,950		70% 수준		만4세	103,200	103,200	154,800
가 구 월평균 소득 30% 만1세 101,100 100% 만2세 83,400 83,400 100% 만3세 57,300 57,300 85,950		도시 근로자		만0세	114,900	114,900	172,350
5층 월평균 소득 100% 만3세 57,300 83,400 125,100 만3세 57,300 85,950				만1세	101,100	101,100	151,650
1000/ 반3세 57,300 57,300 85,950	5층		30%	만2세	83,400	83,400	125,100
100% 미선제 51,600 51,600 77,400				만3세	57,300	57,300	85,950
24-11 31,000 31,000 11,400		100%		만4세	51,600	51,600	77,400

^{*} 자 료: 보건복지부(2009). 보육사업안내, p. 227.

〈표 4〉 정부 미 지원 시설 보육료 단가

(단위: 워) 지원 24시간 구분 지원 대상 종일보육료 연령 야간보육료 비율 보육료 만0세 383,000 924,500 733,000 만1세 506,000 337,000 674,500 1층 법정저소득층 100% 만2세 390,000 278,000 529,000 만3세 191,000 191,000 286,500 만4세 172,000 172,000 258,000 만()세 733,000 383,000 924,500 만1세 506,000 337,000 674,500 최저생계비의 2층 100% 만2세 390,000 278,000 529,000 120% 이하 만3세 191,000 286,500 191,000 만4세 172,000 172,000 258,000 만0세 656,400 306,400 809,600 도시 근로자 만1세 438,600 573,400 269,600 가 구 3층 80% 만2세 334,400 222,400 445,600 월평균소득 만3세 152,800 152,800 229,200 50% 이하 만4세 137,600 137,600 206,400 만()세 579,800 229,800 697,700 도시 근로자 371,200 만1세 202,200 472,300 가 4층 60% 만2세 278,800 166,800 362,200 월평균소득 만3세 114,600 114,600 171,900 70% 이하 만4세 103,200 103,200 154,800 만0세 464,900 114,900 522,350 도시 근로자 만1세 270,100 101,100 320,650 가 구 5층 만2세 30% 195,400 83,400 237,100 월평균소득 만3세 57,300 57,300 85,950 100% 이하 만4세 51,600 77,400 51,600 도시 근로자 만0세 350,000 350,000 만1세 가 169000 _ 169000 5층 구 0% 초과 월평균소득 만2세 112000 112000

100% 초과

^{*} 자 료: 보건복지부(2009). 보육사업안내, p. 228.

(나) 두 자녀 이상 보육료

두 자녀 지원 대상은 도시근로자가구 월 평균소득 수준 이하 자녀 중두 자녀 이상이 보육시설을 동시에 이용할 경우 둘째 자녀 이상(만4세 이하) 아동 중 첫째 자녀가 타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을 이용할 경우에도 둘째 자녀 이상이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첫째 자녀가 취학아동으로 방과 후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둘째 자녀 이상이 보육시설을 이용하더라도 둘째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두 자녀가 동시에 방과 후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법정저소득층 1층 및 2층 차등보육료, 만 5세아 무상보육료, 장애아 무상 보육료를, 둘째 자녀 이상 아동이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방과 후와 보육시설을 이용해도 두 자녀 경감은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이며, 〈표 5〉는 두 자녀 소득액 기준이며,〈표 6〉은 두 자녀 보육료 지원 단가를 표시한 내용과 같다.

그리고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유의 사항에는 차등보육료 정부 지원 단가 100%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부 지원 단가 100%(차등보육료+두 자녀이상보육료)까지 지원하며, 1, 2층 미 지원, 3층 20%, 4층 40%, 5층 50%가지원되고 있다. 그리고 시간 연장, 야간, 24시간, 휴일 보육료는 두 자녀이상 보육료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표 5〉 두 자녀 이상 보육료 가구원수별 소득 인정액 기준

(2009년 6월까지 적용)

가구 원수	3인까지	4인	5인	6인	
소득인정액	357만원 이하	398만원 이하	420만원 이하	460만원 이하	

^{•7}인 이상 가구: 6인 가구 기준으로 1인 증가시마다 30만원씩 증가

^{*} 자 료: 보건복지부(2009). 보육사업안내, p. 229.

〈표 6〉 두 자녀 이상 차등보육료와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단가

구분	지원 대상	지원 비율	연령	지원 단가
			만()세	76,600
	도시근로자가구		만1세	67,400
3층	월평균 소득	20%	만2세	55,600
	50% 수준		만3세	38,200
			만4세	34,400
			만0세	153,200
	도시근로자가구		만1세	134,800
4층	월평균 소득	40%	만2세	111,200
	70% 수준		만3세	76,400
			만4세	68,800
			만()세	191,500
	도시근로자가구		만1세	168,500
5층	월평균 소득	50%	만2세	139,500
	100% 수준		만3세	95,500
			만4세	86,000

^{*} 자 료: 보건복지부(2009). 보육사업안내, p. 230.

(다) 만5세 아 무상보육료

만5세 아 무상 보육료지원 대상의 내용은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수준 이하 자녀 중 초등학교 취학 전 만5세 아동 아동복지법 제16조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 생활 중인 만5세 아동 지원되며 취학 대상 아동 중취학 유예된 아동은 만5세아 무상보육료를 재 지원할 수 있다(취학유예확인서 제출자에 한함). 다만, 취학 유예로 인한 만5세아 무상 보육료 지원은 1회에 한하며, 2004년 1월 1일~ 2월 28일 출생아동이 반 편성 특례에의해 만5세아 반에 편성된 경우 무상보육료 지원 2010년에도 반복하여 만5세아 반에 편성되는 경우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하지 않으므로 가구원수별 소득 인정 액 기준은 〈표 7〉과 같다.

소득 및 재산 조사 시 특례 시에는 만5세아 무상보육 대상자는 아동 보호자에 대한 추정소득을 부과하지 않으며, 소득 및 재산 조사 시 특례를 인정하며, 지원 단가 172천원 법정저소득 1층,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아 동이 정부 미 지원 보육시설을 이용 시 차액은 수납한다. 단 서울형 어린 이집과 정부지원은 차액원비를 수납하지 않으며, 만5세아 지원아동에 대하여 시간 연장형 보육료 지원 단가는 5층 정부지원 단가로 한다.

(표 7) 만 5세아 무상보육료 가구원수별 소득 인정 액 기준 (2009년 6월까지 적용)

가구원수	3인까지	4인	5인	6인
소득인정액	357만원 이하	398만원 이하	420만원 이하	460만원 이하

- 7인 이상 가구: 6인 가구 기준으로 1인 증가시마다 30만원씩 증가
- * 자 료: 보건복지부(2009). 보육사업안내, p. 231.

(라) 장애아 무상보육료

장애아 무상보육료의 지원대상(만0세~만12세 취학 전 장애아) 아동이며, 지원대상은 원칙적으로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를 소지한 취학 전 만5세 이하 장애아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다음의 아동에 대해서는 지원할수 있으며, 취학 연령이 되었음에도 부득이하게 질병 등의 사유로 일반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취학하지 못한 장애아동은 무상보육 대상에 포함한다. 단, 취학 유예서를 제출한 자에 한해서 그리고 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순회교육을 받는 장애아동이 보육 시설을이용하는 경우 보육료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순회교육 장소를 보육시설로 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장애 가능성이 있는 영아(만0~2세) 및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를 미소지한 만5세 이하 장애아도 장애 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지원 가능하다.

유의 사항에는 진단서 유효 기간은 진단서 발행일로 부터 1년간으로 한다. 예를 들면 2007년 8월 16일 발행된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2008년 8 월 15일까지 장애아 보육료 지원하며, 장애아가 부득이하게 휴학한 경우에 도 만12세까지는 보육료를 지원할 수 있다. 단, 취학 유예 및 휴학 등으로 만12세를 초과한 장애아는 지원이 불가하다. 장애아동이 정부 지원을 받는 특수학교(유치부 또는 초등학교 과정)를 이용할 경우에는 장애아 무상보육 료 지원이 불가하며, 초등학교 과정 아동은 방과 후 보육료 지원이 가능하 다.

선정 기준에는 보호자의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지원하되,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 또는 의사의 장애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며, 장애진단서에 의한지원은 시·군·구 제출일자를 기준으로 하며 진단서 제출로 장애아 보육료를 지원하는 경우 주의 사항은 제출된 장애진단서(장애인등록용 장애진단서와는 다름)는 장애아 등급이 반드시 명기될 필요는 없으나 진단서 상의 장애 소견이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표 8〉에 있는『장애인의 종류 및기준』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장애인의 종류 및기준표는〈표 8〉과 같다.

지원 단가에는 정부 지원 시설과 정부 미 지원 시설로 분류하며, 정부 지원 시설 이용아동에는 교사 대 아동비율을 1: 3으로 반을 편성하고, 장애아 전담 또는 통합교사를 별도 배치하여 보육할 경우에는 383,000원이지원되며, 정부 미 지원시설 이용아동에는 교사 대 아동비율을 1: 3으로반을 편성하고, 장애아 전담 또는 통합교사를 별도 배치하여 보육할 경우에는733,000원이 지원된다. 교사 대 아동비율(1: 3)을 준수하지 않거나 장애아 전담 또는 통합교사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반별 보육료 상한액으로 기준을 정한다.

〈표 8〉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 관련)

가. 한 팔, 한 다리 또는 몸통의 기능에 영속적인 장 애가 있는 사람

- 1. 지체 장애인 (肢體 障碍人)
- 다.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골(指骨:손가락 뼈)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또는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한 두 개 이상의 손가락을 모두 제 1지골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다. 한 다리를 리스프랑(Lisfranc: 발등뼈와 발목을 이어주는)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라.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 마. 한 손의 엄지손가락 기능을 잃은 사람 또는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한 손가락 두 개 이상의 기능을 잃은 사람

	바. 왜소증으로 키가 심하게 작거나 척추에 현저한
	변형 또는 기형이 있는 사람
	사. 지체(肢體)에 위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정도 이상의 장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뇌병변 장애인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腦卒中) 등 뇌의
(腦病變 障碍人)	기질적 병변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체적 장애로 보행
()	이나 일상생활의 동작 등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가. 나쁜 눈의 시력(만국식시력표에 따라 측정된 교
	정시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0.02 이하인 사람
3. 시각 장애인	나.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視覺 障碍人)	다.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10도 이하로 남
	은 사람
	라. 두 눈의 시야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가.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4 "1 = 1 = 1 = 1 = 1	나. 한 귀의 청력 손실이 80데시벨 이상, 다른 귀의
4. 청각 장애인	청력 손실이 40데시벨이상인 사람
(聽覺 障碍人)	다.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명료도가 50퍼센
	트 이하인 사람
	라. 평형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5. 언어 장애인	음성 기능이나 언어 기능에 영속적으로 상당한 장
(言語 障碍人)	애가 있는 사람
6. 지적 장애인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
	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知的 障碍人)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신
7. 자폐성 장애인	체표현・자기조절・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自閉性 障碍人)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8. 정신 장애인	지속적인 정신분열병, 분열형 정동장애(情動障碍:
	여러 현실 상황에서 부적절한 정서 반응을 보이는 장
	애), 양극성 정동장애 및 반복성 우울장애에 따른 감
(精神 障碍人)	정조절·행동·사고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신장의 기능부전(機能不全)으로 인하여 혈액투석이	
9. 신장 장애인	나 복막투석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거나 신장 기능	
(腎臟 障碍人)	의 영속적인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	
	을 받는 사람	
10. 심장 장애인	심장의 기능부전으로 인한 호흡곤란 등의 장애로	
(心臟 障碍人)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1. 호흡기 장애인 (呼吸器 障碍人)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 기능부전으로	
	인한 호흡기능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2. 간 장애인 (肝 障碍人)	간의 만성적 기능부전과 그에 따른 합병증 등으로	
	인한 간기능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	
	는 사람	
13. 안면 장애인 안면부위의 변형이나 기형으로 사회생활에		
(顔面 障碍人)	제약을 받는 사람	
14. 장루・요루	배변기능이나 배뇨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장루(腸	
장애인	瘻) 또는 요루(尿瘻)를 시술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腸瘻・尿瘻障碍人)	제약을 받는 사람	
15. 간질 장애인 (癎疾 障碍人)	간질에 의한 뇌신경세포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	
	움이 필요한 사람	

* 자 료: 보건복지부(2009). 보육사업안내, pp. 233~234.

(마) 방과 후 보육료

방과 후 보육료지원 대상(12세 이하 취학아동) 법정저소득층(1층), 2층 및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이 방과 후에 보육시설을 4시간 이상 이용하는 방과 후 어린이이며, 방과 후 보육시설 이용하는 시간의 계산은 아동이 '보육시설에 도착한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만을 산정하며 보육시설에서 제공하는 셔틀버스 이용시간은 포함하지 않으며, 지원 단가는 정부 지원 단가 만5세아 무상보육료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4시간 미만이용시 미지원)하며, 민간어린이집의 지원 단가는 1층 119,000원, 2층 86,000원으로 지원하고 있다. 방과 후 장애아동에는 정부 지원 시설 아동 과 정부 미 지원시설 아동으로 구분한다. 정부 지원 시설 이용아동에는 교

사 대 아동비율을 1: 3으로 반을 편성하고, 장애아 전담 또는 통합교사를 별도 배치하여 보육할 경우에 장애아 무상보육료 50%(191,500원)과 교사대 아동비율(1: 3)을 준수하지 않거나 장애아 전담 또는 통합교사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만5세아 보육료 정부지원 단가 50%(86,000원)로 지원하고 있다. 정부 미 지원 시설 이용아동 에는 교사 대 아동비율을 1: 3으로 반을 편성하고, 장애아 전담 또는 통합교사를 별도 배치하여 보육할 경우에 장애아 무상보육료 50%(366,500원), 교사대 아동비율(1: 3)을 준수하지 않거나 장애아 전담 또는 통합교사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 만5세 아동보육료 상한액 50%를 지원 받는다. 그리고 방학기간 종일제 보육을 실시한 경우 지원 단가 일반 아동일 경우 만5세아 보육료 정부 지원 단가의 100% 지원되며, 장애아동일 경우 장애아 무상보육료 100% 지원받으며, 이용 일자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바) 시간 연장 형 보육료 등

첫째, 시간 연장 보육료에는 시간 연장보육, 야간보육, 24시간 보육, 휴일보육(토요일을 제외), 시간제 보육으로 분류한다. 시간 연장형 보육료에는 시간 연장, 야간 24시간, 휴일보육료를 포함해서 시간 연장 보육료의대월 지원 한도액은 60시간에 한하며, 시간 연장 형, 시간제 보육료를 지원할 경우에는 학부모의 날인 등 증빙 서류를 시·군·구에서 확인하고, 지원 금액은 '지원계층 및 지원율'에 따라 별도로 정한 아래의 기준에 따르며, 법정저소득층(1층)과 장애아동에 대한 지원은 가능하다(취학아동은 24시간 보육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 시간제보육료는 영유아 중 법정 저소득층 및 장애아동에 한해 지원한다(취학아동에 대한 지원 불가).

시간 연장 보육료 기준시간 초과(19: 30~24: 00) 보육료는 시간당 2,400원, 장애아동은 3,400원(연령에 관계없이 동일)이 지원되며, 토요일의 경우 적용 시간은 15시 30분부터 24시까지로 하며, 주간 보육시설 이용아동이 오전 7시 30분 이전부터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초과보육료 지원가능하며, 시간 연장 보육료의 매월 지원 한도액은 60시간에 한하며, 초과보육 이용시간은 매일 시·분 단위로 기록하여 월 단위 합산 후 분 단위

는 절삭하며, 종일제 보육을 A시설에서 받고, B시설로 옮겨 시간 연장 보육을 받는 경우에도 시간 연장 보육료 지원가능(유아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은 지원 불가)하며, 주간보육시설 이용 아동은 19시30분 이전(토요일은 15시30분)에는 시간 연장보육 시간을 산정할 수 없으며, 시간 연장보육서비스만 이용하는 아동은 지원이 불가하며, 시간 연장 지원 단가 내용 〈표 9〉와 같다.

〈표 9〉시간 연장 보육료 지원 단가 기준

구분	지원 단가	지원 한도액	지원율
1층	2,400	144,000	기준액
 2층	2,400	144,000	기준액×100%
3층	1,920	115,200	기준액×80%
4층	1,440	86,400	기준액×60%
5층	720	43,200	기준액×30%

^{*} 자 료: 보건복지부(2009). 보육사업안내, p. 238.

둘째, 야간 보육에는(19: 30~익일 07: 30)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 한해서 주간에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야간에 이용하는 경우에만 야간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야간 보육료 지원은 월 보육료 지원 단가와 동일하게 지원한다. 시·군·구청장은 아동을 보육시설에 방치하는 사례가 없도록 개별 아동에 사례별 관리를 하는 등 필요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셋째, 24시간 보육료를 지원받는 아동의 보호자는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한 부모 또는 조손 가정 등의 아동으로 주간보육도 이용하고 야간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 대해 24시간 보육료를 지원한다.

넷째, 휴일(토요일 제외) 보육료 기준 단가는 정부 지원 시설 일 보육료 × 150% 지원이 되며, 일 보육료는 정부 지원 단가×휴일보육일수/26일 (보육가능 일수로 공휴일 제외)된다. 구체적 실례를 들면, 2일 이용한 만3세 아의 법정 저소득층(1층)아동의 보육료 지원액은 191천원×150% = 22,030원이며, 이에 반해 휴일 보육시설로 지원 및 지정된 경우는 일 보육

료가 100% 지원 가능하다.

다섯째, 시간제 보육이라 함은 종일제 보육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부득이 한 경우에 비정기적으로 보육을 받는 경우를 말하며, 지원대상은 영유아 중 법정저소득층(1층) 및 장애아동(취학아동 제외)이며, 지원 단가는 법정 저소득층 아동 2,600원이며, 장애아동 3,500원이다.

3) 보육시설 운영의 요인

(1) 보육시설의 복지요인

영유아 보육 사업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보육사업이란 영유아와 가정이 도움을 필요로 할 때 국가가 조직적으로 개입하는 것으로, 보호와 교육을 합리적으로 조화시켜 영유아가 건전한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데 그 의의가 있다.

김영모(2002)의 연구에서는 영유아보육법을 기반으로 요보호 아동과 보호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것이 영유아 보육사업의 의의이고, 이는 우리나라 아동 보육사업의 핵심이라고 하였다.

보육시설은 영유아가 대부분의 낮 시간을 보내는 곳으로서 영유아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이들을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하며 아울러 전인적 발달을 촉진할 수 있는 보육프로그램을 수립하여시행하여야 한다(김익균·정원주, 2002).

현대에서 논의되어지고 있는 보육이란, 영유아의 발달적 요구를 위한 교육적 도구로서, 기존의 신체적 보호를 중심으로 하던 보호의 개념에서 영유아의 전인적 발달을 위한 포괄적인 보호 교육 프로그램으로 전환되었는데, 최근에는 이것을 발달적 영유아보육 또는 질적 영유아 보육이라고 부르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영유아보육프로그램에서는 보육시설의 영유아에게 기본 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호하며, 조화로운 발달을 촉 진시킬 수 있는 교육을 한다는 목적 하에 건강, 안전, 영향, 보호 영역에 대한 목표를 수립하고 있다(임홍수, 2002). 영유아보육법 제18조에서는 보육 내용을 영유아의 신체적·지적·정서적 및 사회적 발달을 도모해야 하며, 그에 근거한 보육사업 지침에는 보육의 기본 원칙으로 교육·영양, 건강, 안전, 부모에 대한 서비스, 지역사회와의 교류를 제시하여 영유아에 대한 보호, 양육, 교육의 통합적 균형을 명시하고 있다. 이를 영역화 해보면 교육영역, 보호영역(영양, 건강, 안전), 복지영역(부모서비스, 지역사회와 교류)으로 구분되는 데, 이는 영유아 보육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지침이 영유아의 교육뿐만 아니라 영유아의 일상생활에 대한 보호, 나아가부모와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보육사업을 사회복지서비스로 규정하고 있다(조성혜, 2000).

그러나 대부분의 보육시설에서는 교육영역과 보호영역에는 중점을 두고 있으나 부모에 대한 서비스나 지역사회와의 교류는 제대로 실시되지 못하고 있다(김영모, 2001).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보육프로그램은 단지 영유아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영유아의 전인적 발달에 기초하여 교육과 보호 를 적절히 통합한 프로그램으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부모와 유 아의 요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함께 시급히 요청된다. 보육시설의 복지요인과 관련하여 보호, 영양, 건강, 안전에 관하여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보호

어린이의 지적 발달과 건전한 자아 성장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보육은 어린이집에서 아동의 발달과 보육에 적절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아동복지는 제도적인 개념과 잔여적 개념 모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며 이러한 보호가 어린이집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이 어떻게 계획되고 있으며, 아동의 프로그램을 계획하는 것 등은 필수적인 보호의 요소이며 어린이집의 전문성 이전에 갖게 되는 기본적인 욕구이다.

(2) 영양관리

아동기는 왕성한 활동량, 두뇌의 완성, 신체의 제반 기능 조절 및 사회인지 능력의 발달시기로 특정 지울 수 있다. 그러므로 아동기의 영양은 이시기의 정상적인 발육을 위해 특히 중요하며, 간접적으로는 일생에 걸친식습관에 장기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1일 보육시간이 10시간 이상 되는 보육시설에서는 아동의 건강과 성장 발달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로서 강조된다. 영유아의 영양 필요량을 고려한 식사계획과 합리적인 급식관리를 통해 성장에 필요한 영양소를 균형있게 제공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급식은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에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에 의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3) 건강관리

보육 중사자와 아동의 건강관리는 시설 운영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이다. 먼저 아동의 경우 시설에 입소할 수 있을 만큼 건강과 발육상태가 양호한지, 전염성 질병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 또는 시설에 다니는 동안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지의 여부를 가려 아동의 입소가 결정되기 전에 반드시 사전 건강기록을 부모로부터 확인해야만 하고 입소 후에는 연간 1회 이상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통해 아동의 건강 상태를 항상체크해야 한다. 또한 보육교사의 경우, 교사의 신체적·심리적 상태는 아동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치므로 임용하기 전에 건강진단을 받고 임용 후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 검진을 통해 건강 상태를 확인한다. 시설 내에서는 여러 어린이들이 오랜 시간을 보내게 되므로 집단생활에서 생기기 쉬운 질병의 관리와 쾌적하고 위생적인 생활 환경이 되도록 시설물 및 취사기구 등을 규칙적으로 소독한다.

(4) 안전관리

아동들은 호기심이 많은 반면 협응력이 부족하고 부주의하므로 항상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첫째, 실내의 안전으로 교실은 청결해야 한다. 필요시에는 즉각적으로

쓸고 닦으며 시설물은 정기적으로 닦고 실내 공기는 신선해야 한다. 또한 출구는 접근하기 쉬우며 교실의 비품 설비는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둘째, 화재나 재난에 대비한 방법을 도표화하여 아동들이 기억하도록 교육한다. 셋째, 실내에서는 뛰지 말고, 비품의 사용은 규칙을 정하여 사용하는 등 시설 내의 안전한 생활을 위한 지도를 하며 자신의 안전은 아동 스스로가 보호하도록 한다.

4) 보육시설의 행·재정 요인

(1) 행·재정 요인

행·재정 요인이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육정책, 행정지원 관리체계로써 현재 교육기관인 유치원은 교육법에 준하여 교육과학기술부 및 지방의 교육행정 기관이 관장하고 보육기관인 어린이집은 영유아 보육법에 준하여 사회복지사업의 일환으로 보건복지부와 지방의 일반 행정 기관이 관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동일 연령의 대상 유아를 행정 부처 간에 중복관리함으로써 행·재정적 손실 및 대립이 발생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의 원아 모집을 위한 과다 경쟁이 초래되고, 양 기관 교사의 상이한 양성과정, 자격 요건, 급여 수준 등의 많은 문제가 현존하고 있다.

이제까지 유치원과 보육 시설로 이원화되어 있는 현행 취학 전 교육시설 체계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지만, 21세기를 대비한 유아의 보육 및 교육정책 방향 결정에 있어서 행정 부처 간, 학계 간, 부모 계층 간에 상충된 견해와 대립으로 인하여 여전히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 현 실정이다. 우리나라 취학 전 교육의 일원화를 위해, 보육과 교육을 통합시키는 현행 관리체제 및 법령의 정비, 행·재정적 지원, 교사양성, 프로그램 등의 여러 측면에서의 해결 과제가 있으나, 가장 시급한 당면 과제는 만3세~6세 미만의 유아로 적합한 유아교육을 공급받는 것은 매우중요하다(박정숙, 1999).

행·재정 지원체계를 제도 및 행정체계를 통해서 보육이라는 서비스의 효율성을 가름하는 척도가 되기 때문에 어린이집 운영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보육지원체계는 보육시설의 양적인 증가에 치중한 나머지 질적으로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 보육사업의 지원체계상의 문제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원체계 조직의 문제로 정부조직의 보육사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어 있다. 둘째, 행정인력의 문제로 정부조직의 보육사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어 있다. 셋째, 보육의 질보다 시책이나 지침 중심의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동안 보육사업은 정부의 충분하지 못한 재정 지원과 제도적 미비, 관장부서의 다원화 등으로 종일제 보육, 영아 보육 등 국민이 원하는 보육기능은 미약하였고, 보육시설 또한 보육수요에 비하여 매우 부족한 실정이었다. 하지만 무엇보다 현장에서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 보육시설의 체계적이고 이에 따라 일부 국민들도 어린이들의 보육내용은 질이 낮고 유치원은 질이 높은 교육을 실시한다고 생각하고 있어 1일 12시간 이상의 장기간보육서비스 제공에도 불구하고 보육료 수납액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실정이다.

4. 선행연구 고찰

영유아보육프로그램의 효과 및 분석에 대한 연구는 다양하게 실시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영유아보육프로그램의 효과 및 분석에 대한 선행연구 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보다 적절한 프로그램의 평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김진이(2000)는 "보육사업 서비스는 영유아보육이 신체적·정신적 건강, 영양, 사회 서비스, 가족의 필요한 욕구에의 의뢰 서비스 등을 통합하는 포괄적인 서비스임"을 제시하고 있다.

김기환·김향숙(2001)은 "아동과 가정의 복지를 추구하는 포괄적 보육프로그램을 '지역사회를 토대로 하는 가정 중심의 포괄적 복지 서비스'에 의해 추구 될 수 있으며, 개별화된 포괄적 보육프로그램은 아동, 가정, 지역사회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하는 미시적인 보육프로그램을 의미하고, 보육

아동과 아동이 속한 가정의 심리적·사회적·경제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연령별 차이에 따라 일률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현재의 교육프로그램만으 로는 건전한 발달을 도모할 수 없으며, 보육의 효과도 얻을 수 없게 된다" 고 하였다.

또한 이숙희(1999)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보육프로그램은 단지 영유 아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영유아의 전인적 발달에 기초하여 교육과 보호를 적절히 통합한 프로그램으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 하다고 언급했다. 이는 부모와 유아의 요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함께 요청되는 데, 이러한 결과물로 보육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는 질적인 수준이 낮거나 교육적인 배려를 하지 못하고 단순히 보호만을 제공하는 기관의 경우, 유아의 발달에 있어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질적으로 우수한 프로그램을 제 공할 때는 영유아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질 적으로 우수한 프로그램은 영유아의 지적·정서적·사회적·신체적 발달에 있어서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보육시설의 질적 향상을 위 한 방향을 3단계로 구분했는 데, 1단계에서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의 기 본 원칙과 연령별 기본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여 기초단계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2단계에서는 지역, 유형, 대상 확대 등을 고려한 다양한 보육프로 그램이 개발되어야 하며, 3단계에서는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통합 조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러한 사항들이 종합적으로 논의되어질 때 보육은 바람직하 게 운영될 것이고, 영유아들도 그들이"지닌 잠재력을 최대한 개발하면서 행복하게 성장·발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영석(1996)은 "보육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설의 운영도 중요하지만, 정부의 정책 개발 추진도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정부에서 신뢰할 수 있고 안정된 보육정책을 국민의 생활 속에 정착화하고 영유아의 발달과정, 지역의 특수성, 시설·기관별의 특성, 보육교사의 이질성 등에 부응할 수 있는 보육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김영모(2001)는 "우리나라에 필요하고 적합한 보육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하여 기존의 교육 및 보육프로그램을 평가하고 있고, 정

부가 개발한 보육프로그램과 그에 대한 지침을 분석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영유아보육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해 직접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민간어린이집의 보육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다. 그의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보육프로그램을 교육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로 구분하여 각각의 지침에 대한 고찰 및 프로그램 평가를 하고 있다"고 제시했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고찰한 결과 민간어린이집 교육프로그램의 복지요 인과 행·재정요인에 대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았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민간어린이집 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비 확률 편의 추출로, 2009년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서울특별시 G구에 소재하고 있는 시설장 29명과 민간어린이집 교사 191명 총 280명의 교사를 연구의 대상으로 하였다. 280부의 질문지를 배포하여 그 중 220부가 회수되었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 교사의 개인 배경은<표10>과 같다.

〈표 10〉연구대상 교사의 개인배경

구	분	N	percent(%)
	남	2	0.91
성 별	여	218	99.09
	계	220	100
	20대	97	45.33
면 연 형	30대	67	31.31
L 0	40대	50	23.36
	계	214	100
	고등학교	41	18.64
	전문대학	114	51.82
학 력	대학교	58	26.36
	대학원	7	3.18
	계	220	100
	유아교육	99	45
전 공	사회복지	32	14.55
전 공	아동학	26	11.82
	가정학	6	2.73

		간호학	1	0.45
		기타	56	25.45
		계	220	100
		1년 미만	50	22.83
		1-3년 미만	46	21.00
경	럭	3-5년 미만	40	18.26
0	'	5-10년 미만	53	24.20
		10년 이상	30	13.70
		계	219	100
		보육교사 1급	119	60.41
유	쳥	보육교사 2급	58	29.44
''	8	보육교사 3급	20	10.15
		계	197	100
		교 사	189	86.70
직	위	시설장	29	13.30
		계	218	100

2.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는 검사도구로 복지 변인, 행·재정 변인, 민간어린이집 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에 대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 도구들은 기존 질문지를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하였다.

첫째, 복지변인을 측정하기 위하여 임홍수(2002)의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복지변인은 보호, 영양, 건강, 안전 등 4개의 하위 총26문항이며, 행·재정 변인 5문항 등 총31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작성된 문항은 '아주 일치, '일치, '보통, '불일치, '전혀 불일치로 표현된 Likert의 5단계 척도를 사용하였다.

둘째, 민간어린이집 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에 대한 질문지는 최귀 영(2001)의 질문지를 연구 목적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해서 사용하였다. 민간어린이집 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에 대한 질문지는 어린이집 운영의 문제점, 교사확보 측면의 문제점, 공적 재정지원의 문제점, 행정적 지원의 개선점, 어린이집 운영상 애로 사항 등 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 사용된 연구 도구의 하위변인과 신뢰도는 <표 11>과 같다.

〈표 11〉연구 도구의 하위 변인과 신뢰도

변 인	내 용	문 항	cronbach	
	보호 변인	5 (1-5)	0.6127	
I . 복지 변인	영양 변인	9 (6-14)	0.8872	
1. 녹시 변원	건강 변인	4 (15-18)	0.9036	
	안전 변인	8 (19-26)	0.8442	
Ⅱ. 행·재정 변인	행·재정 변인	5 (27-31)	0.8309	
Ⅲ. 운영의문제점 및 개선점	운영 변인	4 (32-35)		

3. 자료처리

본 연구에서 수검된 자료의 통계처리는 SPSS 1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통계처리의 유의 수준은 p<.05, p<.01, p<.001에서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자료의 통계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민간어린이집의 교육 프로그램의 복지 요인은 교사의 배경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하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민간어린이집 행·재정 요인은 교사와 시설장 배경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하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민간어린이집 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점을 분석하기 위하여 \mathbf{X}^2 을 사용하였다.

HANSUNG UNIVERSITY

Ⅳ. 결과 분석 및 해석

1. 교사의 개인적 배경변인에 따른 민간어린이집 보육프로그램의 복지요인

교사 개인적 배경변인에 따른 복지 변인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하위변인을 보호, 영양, 건강, 안전으로 구분해서 제시하고자 한다.

1) 보호 변인

교사의 개인적 배경변인에 따라 보호 변인의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본 결과를 <표 12>와 같다.

<표 12> 교사의 개인적 배경변인에 따른 보호 변인의 차이검증

구 분	변 인	N	M	SD	F/t	p
	남	2	41	0.1414		
성 별	여	218	4.467	0.5012	-1.03	0.3027
	계	220	22.7335	0.3213		
	20대	97	4.39	0.56		
연 령	30대	67	4.55	0.47	2.25	0.1074
11 6	40대	50	4.50	0.41	2.20	0.1074
	계	214	4.48	0.48	-	
	고등학교	41	4.56	0.54		
	전문대학	114	4.49	0.49		
학 력	대학교	58	4.38	0.46	1.60	0.1905
	대학원	7	4.26	0.62		
	계	220	4.4225	0.5275		
	유아교육	99	4.47	0.48		
	사회복지	32	4.46	0.46		
əl ə	아동학	26	4.52	0.50	0.50	0.750
전 공	가정학	6	4.27	0.60	0.53	0.7560
	간호학	1	5.00			
	기타	56	4.44	0.56		

	계	220	4.5267	0.4333		
	1년 미만	50	4.50	0.58		
	1-3년 미만	46	4.46	0.50		
경 력	3-5년 미만	40	4.34	0.51	0.99	0.4161
0 7	5-10년 미만	53	4.53	0.44	0.55	0.4101
	10년 이상	30	4.49	0.41		
	계	219	4.464	0.488		
	보육교사 1급	119	4.48	0.51		
유 형	보육교사 2급	58	4.48	0.46	0.90	0.4069
11 0	보육교사 3급	20	4.32	0.67	0.50	0.4003
	계	197	4.4267	0.5467		
	교 사	189	4.4466	0.5181		
직 위	시설장	29	4.5655	0.3588	-1.19	0.2345
	계	218	4.5060	0.4384		

< 표 12>에 의하면 그 결과를 살펴보면, 교사의 보호에 대한 신념의 차이는 남교사 보다는 여교사가 높았고(4.47), 연령에 따라서는 40대가 (4.50), 학력에 따라서는 고졸이(4.56), 전공에 따라서는 간호학 전공교사가 (5.00), 경력에 따라서는 5년~10년 미만(4.53), 자격 유형은 보육교사 1급 이(4.48), 직위에 따라서는 평교사보다는 시설장(4.56)이 높게 나타났다.

2) 영양 변인

교사의 개인적 배경변인에 따라 영양 변인의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본 결과는<표 13>과 같다.

<표 13> 교사의 개인적 배경변인에 따른 영양 변인의 차이 검증

변변 2 4.3889 0.2357 정 별 역 218 4.5917 0.5235 -0.55 0.5853 계 220 4.4903 0.3796 20대 97 4.51 0.55 30대 67 4.64 0.54 40대 50 4.68 0.40 2.14 0.1206 계 214 4.61 0.4967 고등학교 41 4.71 0.34 권문대학 114 4.56 0.51 대학원 7 4.81 0.33 계 220 4.6525 0.455 대학원 7 4.81 0.33 계 220 4.6525 0.455 사회복지 32 4.56 0.40 아등학 26 4.70 0.34 사회복지 32 4.56 0.40 아등학 26 4.70 0.34 가정학 6 4.65 0.45 기 타 56 4.61 0.55 계 220 4.6783 0.3883 기 220 4.6783 0.3883 1년 미만 50 4.55 0.56 계 220 4.6783 0.3883 기 보 56 4.61 0.55 계 220 4.6780 0.32 기 타 56 4.61 0.55 계 220 4.6780 0.3883 김년 미만 46 4.45 0.72 3-5년 미만 46 4.45 0.72 3-5년 미만 40 4.57 0.44 5-10년 미만 53 4.71 0.40 10년 이상 30 4.69 0.32 계 219 4.594 0.488 본유교사 1급 119 4.62 0.52 보육교사 2급 58 4.52 0.55 계 219 4.553 0.55 계 197 4.553 0.55 교 사 189 4.5567 0.5454 직 1.49 0.2190	구 분	변 인	N	M	SD	F/t	р
변형 경기 220 4.4903 0.3796 20대 97 4.51 0.55 30대 67 4.64 0.54 40대 50 4.68 0.40 전문대학 114 4.56 0.51 대학교 58 4.53 0.64 대학원 7 4.81 0.33 제 220 4.6525 0.455 0.59 사회복지 32 4.56 0.40 아동학 26 4.70 0.34 가정학 6 4.65 0.45 전문학학 1 5.00 고기타 56 4.61 0.55 제 220 4.6783 0.3883 1년 미만 50 4.6783 0.3883 1년 미만 46 4.45 0.72 3-5년 미만 40 4.57 0.44 5-10년 미만 53 4.71 0.40 1.86 0.1182 10년 이상 30 4.69 0.32 제 219 4.594 0.488 보육교사 2급 58 4.52 0.55 보육교사 3급 20 4.52 0.58 제 197 4.553 0.55 교 사 189 4.5567 0.5454 0.425 0.52 보육교사 3급 20 4.52 0.58 제 197 4.553 0.55 교 사 189 4.5567 0.5454 0.425 0.52 보육교사 3급 20 4.52 0.58 교 사 189 4.5567 0.5454 0.5055 2.25 *0.0255	1 6					170	P
변형 220 4.4903 0.3796 20대 97 4.51 0.55 30대 67 4.64 0.54 40대 50 4.68 0.40 2.14 0.1206 전문대학 114 4.56 0.51 대학교 58 4.53 0.64 대학원 7 4.81 0.33 계 220 4.6525 0.455 4.54 4.54 0.55 4.54 4.54 0.55 4.55 0.59 사회복지 32 4.56 0.40 아동학 26 4.70 0.34 가정학 66 4.65 0.45 7 다양학 1 5.00 . 기타 56 4.61 0.55 계 220 4.6783 0.3883 1년 미만 50 4.45 0.72 3-5년 미만 40 4.57 0.44 5-10년 미만 53 4.71 0.40 1.86 0.1182 1.0년 이상 30 4.69 0.32 계 219 4.594 0.488 보육교사 2급 58 4.52 0.55 보육교사 3급 20 4.53 0.55 7 0.245 7 0.44 7.57 0.44 7.57 0.49 7.50 7.50 7.50 7.50 7.50 7.50 7.50 7.50	성 별	여	218	4.5917	0.5235	-0.55	0.5853
연 형 성 대학		계	220	4.4903	0.3796		
연 형 40대 50 4.68 0.40 2.14 0.1206 계 214 4.61 0.4967 교등학교 41 4.71 0.34 전문대학 114 4.56 0.51 대학교 58 4.53 0.64 1.49 0.2190 대학원 7 4.81 0.33 계 220 4.6525 0.455 유아교육 99 4.55 0.59 사회복지 32 4.56 0.40 아동학 26 4.70 0.34 가정학 6 4.65 0.45 기 타 56 4.61 0.55 계 220 4.6783 0.3883 1년 미만 50 4.55 0.56 1-3년 미만 46 4.45 0.72 3-5년 미만 40 4.57 0.44 5-10년 미만 53 4.71 0.40 10년 이상 30 4.69 0.32 계 219 4.594 0.488 보육교사 1급 119 4.62 0.52 보육교사 2급 58 4.52 0.55 보육교사 2급 58 4.52 0.55 보육교사 2급 58 4.52 0.58 계 197 4.553 0.55 교 사 189 4.5567 0.5454 시설장 29 4.7893 0.2775 -2.25 *0.0256		20대	97	4.51	0.55		
지 214 4.61 0.4967 교등학교 41 4.71 0.34 전문대학 114 4.56 0.51 대학교 58 4.53 0.64 대학원 7 4.81 0.33 제 220 4.6525 0.455 유아교육 99 4.55 0.59 사회복지 32 4.56 0.40 아동학 26 4.70 0.34 가정학 6 4.65 0.45 간호학 1 5.00 . 기 타 56 4.61 0.55 제 220 4.6783 0.3883 1년 미만 50 4.55 0.56 1-3년 미만 46 4.45 0.72 3-5년 미만 40 4.57 0.44 5-10년 미만 53 4.71 0.40 10년 이상 30 4.69 0.32 제 219 4.594 0.488 본육교사 1급 119 4.62 0.52 보육교사 2급 58 4.52 0.55 보육교사 3급 20 4.52 0.58 제 197 4.553 0.55 교 사 189 4.5567 0.5454 시설장 29 4.7893 0.2775 -2.25 *0.0256	در د	30대	67	4.64	0.54	0.14	0.1000
지 기타	연 탱	40대	50	4.68	0.40	2.14	0.1206
작 력 대학교 58 4.53 0.64 1.49 0.2190 대학교 7 4.81 0.33 계 220 4.6525 0.455 0.455 0.59 사회복지 32 4.56 0.40 아동학 26 4.70 0.34 가정학 6 4.65 0.45 0.55 계 220 4.6783 0.3883 0.3883 1년 미만 50 4.55 0.56 1-3년 미만 46 4.45 0.72 3-5년 미만 40 4.57 0.44 5-10년 미만 53 4.71 0.40 1.86 0.1182 위 보육교사 1급 119 4.62 0.52 보육교사 2급 58 4.52 0.55 보육교사 3급 20 4.52 0.58 기의 197 4.553 0.55 교 사 189 4.5567 0.5454 지원 1.89 4.5567 0.5454		계	214	4.61	0.4967		
학 력 대학교 58 4.53 0.64 1.49 0.2190 대학원 7 4.81 0.33 계 220 4.6525 0.455		고등학교	41	4.71	0.34		
대학원 7 4.81 0.33 계 220 4.6525 0.455 유아교육 99 4.55 0.59 사회복지 32 4.56 0.40 아동학 26 4.70 0.34 가정학 6 4.65 0.45 간호학 1 5.00 . 기 타 56 4.61 0.55 계 220 4.6783 0.3883 기년 미만 50 4.55 0.56 1-3년 미만 46 4.45 0.72 3-5년 미만 40 4.57 0.44 5-10년 미만 53 4.71 0.40 1.86 10년 이상 30 4.69 0.32 계 219 4.594 0.488 보육교사 1급 119 4.62 0.52 보육교사 2급 58 4.52 0.55 보육교사 3급 20 4.52 0.58 계 197 4.553 0.55 교 사 189 4.5567 0.5454 직위 시설장 29 4.7893 0.2775 -2.25 *0.0255		전문대학	114	4.56	0.51		
지 220 4.6525 0.455 유아교육 99 4.55 0.59 사회복지 32 4.56 0.40 아동학 26 4.70 0.34 가정학 6 4.65 0.45 간호학 1 5.00 . 기타 56 4.61 0.55 게 220 4.6783 0.3883 지 220 4.57 0.56 1-3년 미만 50 4.55 0.56 1-3년 미만 46 4.45 0.72 3-5년 미만 40 4.57 0.44 5-10년 미만 53 4.71 0.40 10년 이상 30 4.69 0.32 게 219 4.594 0.488 문육교사 1급 119 4.62 0.52 보육교사 2급 58 4.52 0.55 보육교사 3급 20 4.52 0.58 계 197 4.553 0.55 교 사 189 4.5567 0.5454 지 시설장 29 4.7893 0.2775 -2.25 *0.0255	학 력	대학교	58	4.53	0.64	1.49	0.2190
유아교육 99 4.55 0.59 사회복지 32 4.56 0.40 아동학 26 4.70 0.34 가정학 6 4.65 0.45 간호학 1 5.00 . 기타 56 4.61 0.55 계 220 4.6783 0.3883 지비 1년 미만 50 4.55 0.56 1-3년 미만 46 4.45 0.72 3-5년 미만 40 4.57 0.44 5-10년 미만 53 4.71 0.40 1.86 10년 이상 30 4.69 0.32 지비 219 4.594 0.488 본육교사 1급 119 4.62 0.52 보육교사 2급 58 4.52 0.55 보육교사 2급 58 4.52 0.55 보육교사 3급 20 4.53 0.55 지비 197 4.553 0.55 지비 197 4.553 0.55 지비 197 4.553 0.55 지비 189 4.5567 0.5454 지비 14장 29 4.7893 0.2775 -2.25 *0.0255		대학원	7	4.81	0.33		
전 공 사회복지 32 4.56 0.40 0.34		계	220	4.6525	0.455	_	
전 공 이용학 26 4.70 0.34 7.73학 6 4.65 0.45 0.50 0.7765 간호학 1 5.00		유아교육	99	4.55	0.59		N = 70
전 공 가정학 6 4.65 0.45 0.50 0.7765 간호학 1 5.00 . 기 타 56 4.61 0.55 제 220 4.6783 0.3883 1년 미만 50 4.55 0.56 1-3년 미만 46 4.45 0.72 3-5년 미만 40 4.57 0.44 5-10년 미만 53 4.71 0.40 1.86 0.1182 10년 이상 30 4.69 0.32 제 219 4.594 0.488 보육교사 1급 119 4.62 0.52 보육교사 2급 58 4.52 0.55 보육교사 3급 20 4.52 0.58 제 197 4.553 0.55 교 사 189 4.5567 0.5454 직 시설장 29 4.7893 0.2775 -2.25 *0.0255		사회복지	32	4.56	0.40	w	
전호학 1 5.00 기타 56 4.61 0.55 계 220 4.6783 0.3883 1년 미만 50 4.55 0.56 1-3년 미만 46 4.45 0.72 3-5년 미만 40 4.57 0.44 5-10년 미만 53 4.71 0.40 10년 이상 30 4.69 0.32 계 219 4.594 0.488 문육교사 1급 119 4.62 0.52 보육교사 2급 58 4.52 0.55 보육교사 3급 20 4.52 0.58 계 197 4.553 0.55 교 사 189 4.5567 0.5454 직위 시설장 29 4.7893 0.2775 -2.25 *0.0255		아동학	26	4.70	0.34		
자호학 1 5.00 . 기타 56 4.61 0.55 제 220 4.6783 0.3883 1년 미만 50 4.55 0.56 1-3년 미만 46 4.45 0.72 3-5년 미만 40 4.57 0.44 5-10년 미만 53 4.71 0.40 1.86 지 219 4.594 0.488 사항 보육교사 1급 119 4.62 0.52 보육교사 2급 58 4.52 0.55 보육교사 3급 20 4.52 0.58 제 197 4.553 0.55 교 사 189 4.5567 0.5454 직위 시설장 29 4.7893 0.2775 -2.25 *0.0255	전 공	가정학	6	4.65	0.45	0.50	0.7765
지 220 4.6783 0.3883 1년 미만 50 4.55 0.56 1-3년 미만 46 4.45 0.72 3-5년 미만 40 4.57 0.44 5-10년 미만 53 4.71 0.40 10년 이상 30 4.69 0.32 제 219 4.594 0.488 본육교사 1급 119 4.62 0.52 보육교사 2급 58 4.52 0.55 보육교사 3급 20 4.52 0.58 계 197 4.553 0.55 교 사 189 4.5567 0.5454 직위 시설장 29 4.7893 0.2775 -2.25 *0.0255		간호학	1	5.00	/ []		
지 1년 미만 50 4.55 0.56 1-3년 미만 46 4.45 0.72 3-5년 미만 40 4.57 0.44 5-10년 미만 53 4.71 0.40 1.86 0.1182 10년 이상 30 4.69 0.32 기계 219 4.594 0.488 보육교사 1급 119 4.62 0.52 보육교사 2급 58 4.52 0.55 보육교사 3급 20 4.52 0.58 기계 197 4.553 0.55 교 사 189 4.5567 0.5454 지 189 4.5567 0.5454 지 14절장 29 4.7893 0.2775 -2.25 *0.0255		기 타	56	4.61	0.55		
경 력 1-3년 미만 46 4.45 0.72 3-5년 미만 40 4.57 0.44 1.86 0.1182 10년 이상 30 4.69 0.32 계 219 4.594 0.488 보육교사 1급 119 4.62 0.52 보육교사 2급 58 4.52 0.55 보육교사 3급 20 4.52 0.58 계 197 4.553 0.55 교 사 189 4.5567 0.5454 시설장 29 4.7893 0.2775 -2.25 *0.0255		계	220	4.6783	0.3883		
경 력 3-5년 미만 40 4.57 0.44 5-10년 미만 53 4.71 0.40 1.86 0.1182 10년 이상 30 4.69 0.32 제 219 4.594 0.488 보육교사 1급 119 4.62 0.52 보육교사 2급 58 4.52 0.55 보육교사 3급 20 4.52 0.58 제 197 4.553 0.55 교 사 189 4.5567 0.5454 지원장 29 4.7893 0.2775 -2.25 *0.0255		1년 미만	50	4.55	0.56		
정 력 5-10년 미만 53 4.71 0.40 1.86 0.1182 10년 이상 30 4.69 0.32 계 219 4.594 0.488 보육교사 1급 119 4.62 0.52 보육교사 2급 58 4.52 0.55 보육교사 3급 20 4.52 0.58 기계 197 4.553 0.55 교 사 189 4.5567 0.5454 지원장 29 4.7893 0.2775 -2.25 *0.0255		1-3년 미만	46	4.45	0.72		
지 219 4.594 0.488 보육교사 1급 119 4.62 0.52 보육교사 2급 58 4.52 0.55 보육교사 3급 20 4.52 0.58 계 197 4.553 0.55 교 사 189 4.5567 0.5454 직 시설장 29 4.7893 0.2775 -2.25 *0.0255		3-5년 미만	40	4.57	0.44		
지 219 4.594 0.488 보육교사 1급 119 4.62 0.52 보육교사 2급 58 4.52 0.55 보육교사 3급 20 4.52 0.58 지 197 4.553 0.55 교 사 189 4.5567 0.5454 직 시설장 29 4.7893 0.2775 -2.25 *0.0255	경 력	5-10년 미만	53	4.71	0.40	1.86	0.1182
유형 보육교사 1급 119 4.62 0.52 보육교사 2급 58 4.52 0.55 보육교사 3급 20 4.52 0.58 0.87 0.4191 계 197 4.553 0.55 교 사 189 4.5567 0.5454 직 위 시설장 29 4.7893 0.2775 -2.25 *0.0255		10년 이상	30	4.69	0.32		
유형 보육교사 2급 58 4.52 0.55 보육교사 3급 20 4.52 0.58 0.87 0.4191 계 197 4.553 0.55		계	219	4.594	0.488		
유형 보육교사 3급 20 4.52 0.58 0.87 0.4191 계 197 4.553 0.55 교사 189 4.5567 0.5454 직위 시설장 29 4.7893 0.2775 -2.25 *0.0255		보육교사 1급	119	4.62	0.52		
보육교사 3급 20 4.52 0.58 계 197 4.553 0.55 교 사 189 4.5567 0.5454 직 위 시설장 29 4.7893 0.2775 -2.25 *0.0255	A -1	보육교사 2급	58	4.52	0.55		
교 사 189 4.5567 0.5454 직위 시설장 29 4.7893 0.2775 -2.25 *0.0255	유 형	보육교사 3급	20	4.52	0.58	0.87	0.4191
직 위 시설장 29 4.7893 0.2775 -2.25 *0.0255		계	197	4.553	0.55		
		교 사	189	4.5567	0.5454		
계 218 4.673 0.4114	직 위	시설장	29	4.7893	0.2775	-2.25	*0.0255
		계	218	4.673	0.4114		

*p <.05

<표 13>에 의하면, 교육프로그램의 기본 원칙 중 특성에 따른 영양에 대한 교사의 신념의 차이는 (p<.05)의 유의도를 나타냈다. (p<.05). 평균값을 통해서 살펴보면, 남교사보다 여교사(4.59)가 높았고, 연령에 따라서는 40대가(4.68)가 학력에는 대학원 이상(4.81)이 전공에 따라서는 간호학 전공 교사(5.00)가 경력에 따라서는 10년 이상 교사(4.69)가 자격 유형은 보육교사 1급의 교사(4.62)가 직위에 따라서는 평교사보다는 시설장(4.79)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직위에 대해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교사에 비해 시설장이 높게 나타나 교사에 비해 시설장이 영양에 대한 영양 변인의 차이가 시설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냈음을 알 수 있었다.</p>

HANSUNG UNIVERSITY

3) 건강 변인

교사의 개인적 배경변인에 따라 건강 변인의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본 결과는 <표 14>와 같다.

<표 14> 교사의 개인적 배경변인에 따른 건강 변인의 차이 검증

구 분	변 인	N	M	SD	F/t	р
	남	2	4	1.4142		
성 별	여	218	4.6342	0.5801	-1.52	0.1295
	계	220	4.3171	0.9971		
	20대	97	4.56	0.59		
연 령	30대	67	4.68	0.65	0.90	0.4065
	40대	50	4.67	0.51	0.50	0.1000
	계	214	4.6367	0.5833		
	고등학교	41	4.78	0.44		
	전문대학	114	4.59	0.58		
학 력	대학교	58	4.56	0.70	1.81	0.1467
	대학원	7	4.89	0.20		
	계	220	4.705	0.48		
	유아교육	99	4.57	0.67		
	사회복지	32	4.61	0.50	0.76	0.5767
	아동학	26	4.81	0.38		
전 공	가정학	6	4.58	0.52		
	간호학	1	5.00	/		
	기 타	56	4.65	0.58		
	계	220	4.7033	0.345		
	1년 미만	50	4.58	0.66		
	1-3년 미만	46	4.59	0.71		
경 력	3-5년 미만	40	4.59	0.56	0.48	0.7468
70 -1	5-10년 미만	53	4.70	0.47	0.40	0.7400
	10년 이상	30	4.70	0.50		
	계	219	4.632	0.58		
	보육교사 1급	119	4.62	0.61		
유 형	보육교사 2급	58	4.61	0.57	0.43	0.6486
11 0	보육교사 3급	20	4.49	0.69	0.40	0.0400
	계	197	4.5733	0.6233		
	교 사	189	4.5952	0.6174		
직 위	시설장	29	4.8448	0.2867	-2.14	*0.0336
	계	218	4.72	0.4520		

*p <.05

<표 14>에 의하면, 교육프로그램의 기본 원칙 중 특성에 따른 건강에 대한 교사의 배경 변인의 차이는 직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 타났다(p<.05). 평균값을 통해서 살펴보면, 시설장(4.84), 교사(4.59)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교사에 비해 시설장이 높게 나타나 교사에 비해 시설장이 직위에 대한 배경변인의 차이는 시설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냈음을 알 수 있었다.

HANSUNG UNIVERSITY

4) 안전 변인

교사의 개인적 배경변인에 따라 안전 변인의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본 결과는 <표 15>와 같다.

<표 15> 교사의 개인적 배경 변인에 따른 안전 변인의 차이 검증

구 분	변 인	N	M	SD	F/t	р
· · · · ·	남	2	4.0625	0.7955		
성 별	여	218	4.7454	0.4346	-2.20	*0.0289
	계	220	4.4039	0.6150		
	20대	97	4.68	0.46		
연 령	30대	67	4.73	0.49	2.22	0.1112
2 0	40대	50	4.84	0.31	2,22	0.1112
	계	214	4.75	0.42		
	고등학교	41	4.85	0.28		
	전문대학	114	4.68	0.45		
학 력	대학교	58	4.77	0.46	1.59	0.1931
	대학원	7	4.71	0.76		
	계	220	4.7525	0.4875		
	유아교육	99	4.72	0.48		
	사회복지	32	4.71	0.43		
	아동학	26	4.84	0.24	001	
전 공	가정학	6	4.88	0.25	0.54	0.7492
	간호학	1	5.00			
	기 타	56	4.72	0.47		
	계	220	4.8117	0.3117		
	1년 미만	50	4.76	0.39		
	1-3년 미만	46	4.65	0.56		
경 력	3-5년 미만	40	4.68	0.49	1 15	0.0010
경 덕	5-10년 미만	53	4.82	0.37	1.15	0.3318
	10년 이상	70	4.78	0.34		
	계	259	4.738	0.43	1	
	보육교사 1급	119	4.74	0.48		
ㅇ 젊	보육교사 2급	58	4.74	0.36	1.60	0.2051
유 형	보육교사 3급	20	4.55	0.54	1.60	0.2051
	계	197	4.6767	0.46		
	교 사	189	4.713	0.4657		
직 위	시설장	29	4.8966	0.1738	-2.10	*0.0371
7 1	계	218	4.8048	0.3197	1	

*p <.05

<표 15>에 의하면, 교육프로그램의 기본 원칙 중 특성에 따른 안전에 대한 교사의 신념의 차이는 성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났다 (p<.05). 평균값을 통해서 살펴보면, 남(4.06), 여(4.75)순으로 나타났으며, 직위에서 통계적으로 살펴보면, 시설장(4.90), 교사(4.71)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남성에 비해 여성이 높게 나타냈음을 알 수 있고, 교사에 비해 시설장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성별과 직위에 대해서 유의 하게 나타났다.



2 . 교사의 개인적 배경변인에 따른 민간어린이집의 행ㆍ재정 요인

교사 개인적 배경변인에 따른 행·재정 변인의 인식 차이 검증은 <표 16>과 같다.

<표 16> 교사의 개인적 배경변인에 따른 행·재정 변인의 차이 검증

구 분	변 인	N	M	SD	F/t	р
	남	2	3.7	0.4243		
성 별	여	218	4.4326	0.6656		
	계	220	4.0663	0.5449		
	20대	97	4.40	0.74		
연 령	30대	67	4.42	0.67	0.42	0.6555
L 0	40대	50	4.51	0.49	0.12	0.0000
	계	214	4.4433	0.6333		
	고등학교	41	4.65	0.50		
	전문대학	114	4.37	0.69		
학 력	대학교	58	4.37	0.70	1.98	0.1177
	대학원	7	4.46	0.72		
	계	220	4.4625	0.6525		
	유아교육	56	4.40	0.68		
	사회복지	99	4.37	0.74		
	아동학	32	4.51	0.55	0.68	0.6389
전 공	가정학	26	4.61	0.46		
	간호학	6	4.37	0.54		
	기 타	1	4.60			
	계	220	4.4767	0.495		
	1년 미만	50	4.40	0.77		
	1-3년 미만	46	4.40	0.79		
경 력	3-5년 미만	40	4.43	0.56	0.18	0.9486
73 H	5-10년 미만	53	4.49	0.59	0.18	0.9480
	10년 이상	30	4.39	0.57		
	계	219	4.422	0.656		
	보육교사 1급	119	4.51	0.63		
유 형	보육교사 2급	58	4.34	0.76	1.55	0.2145
11 %	보육교사 3급	20	4.34	0.69	1.00	0.2145
	계	197	4.3967	0.6933		
	교 사	189	4.3974	0.6899		
직 위	시설장	29	4.5793	0.485	-1.37	0.1727
	계	218	4.4883	0.5874		

<표 16>에 의하면, 성별, 연령, 학력, 전공, 경력, 유형, 직위에 따른 인식을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그 결과를 살펴보면 교사의 보호에 대한 배경변인의 차이는 남교 사보다 여교사가 높았고(4.43), 연령에 따라서는 40대가(4.51), 학력에 따라 서는 고졸이(4.65), 전공에 따라서는 가정학 전공교사가(4.61), 경력에 따라 서는 5년에서 10년 미만(4.49), 자격유형은 보육교사 1급 교사가 (4.51), 직 위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으나 교사보다는 시설장이(4.58) 이 높게 나타났다.

3. 교사의 개인적 배경변인에 따른 민간어린이집 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점

교사의 개인 배경 변인에 따른 민간어린이집 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점은 보육시설 운영상 문제점, 교사확보 측면에서 문제점, 공적 재정 지원에 대한 불만족 사항, 보육 시스템과 관련된 행정적 지원 및 개선 사항으로 분류해서 제시하고자 한다.

1) 교사의 개인적 배경변인에 따른 민간어린이집 운영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표 17>과 같다.

<표 17> 교사의 개인적 배경 변인에 따른 민간어린이집 운영상 문제점 (%)

7	- 분	원아모집	재정 부족	교사확보의 어려움	시설 부족	x²/p/df	
	남	0(0)	2(0.91)	0(0)	0(0)	x ² =4.884	
성 별 	여	101(46.12)	62(63.42)	17(16.85)	37(36.66)	p=0.1802 df=3	
	20대	49(23)	27(12.68)	9(4.23)	12(5.63)	$x^2=3.2424$	
연 령	30대	30(14.08)	19(8.92)	5(2.35)	13(6.10)	p=0.7779	
	40대	20(9.39)	16(7.51)	3(1.41)	10(4.69)	df=6	
	고등학교	21(9.59)	9(4.11)	4(1.83)	7(3.20)	$-x^2=8.2501$	
학 력	전문대학	53(24.20)	35(15.98)	10(4.57)	16(7.31)	p=0.5092	
9 9	대학교	24(10.96)	16(7.31)	3(1.37)	14(6.39)	-	
	대학원	3(1.37)	4(1.83)	0(0)	0(0)	df=9	
	유아교육	41(41.41)	25(25.25)	11(11.11)	22(22.22)		
	사회복지	14(6.39)	14(6.39)	2(0.91)	2(0.9)	$x^2 = 15.4536$	
전 공	아동학	13(5.94)	9(4.11)	0(0)	4(1.83)		
신 궁	가정학	2(0.91)	3(1.37)	0(0)	1(0.46)	p=0.4193	
	간호학	1(0.46)	0(0)	0(0)	0(0)	df=15	
	기 타	30(13.7)	13(5.94)	4(1.83)	8(3.65)		
	1년 미만	23(10.55)	15(6.88)	4(1.83)	8(3.67)		
	1-2년 미만	24(11.01)	9(4.13)	6(2.75)	6(2.75)	$x^2 = 9.1231$	
경 력	3-5년 미만	22(10.09)	11(5.05)	2(0.92)	5(2.29)	p=0.6924	
	5-10년 미만	22(10.09)	17(7.80)	3(1.38)	11(5.05)	df=12	
	10년 이상	10(4.59)	11(5.05)	2(0.92)	7(3.21)		
	보육교사 1급	58(29.59)	38(19.39)	6(3.06)	17(8.67)	x ² =6.3460	
유 형	보육교사 2급	29(14.80)	12(6.12)	7(3.57)	9(4.59)	p=0.0204	
	보육교사 3급	8(4.08)	4(2.04)	4(2.04)	4(2.04)	df=6	
	교 사	90(41.47)	52(23.96)	14(6.45)	32(14.75)	x ² =2.1605	
직 위	시설장	10(4.61)	11(5.07)	3(1.38)	5(2.30)	p=0.5398 df=3	

*p <.05

< 표 17>에 의하면, 교사의 배경변인에 따른 민간어린이집 운영상 문제점에 대한 차이 검증에서 교사 유형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p <.05), 보육교사 1급은 원아모집(29.6%), 재정 부족(19.4%), 시설 부족(8.7%), 교사확보의 어려움(3.1%)순이며, 보육교사 2급은 원아모집(14.8%), 재정 부족(6.1%), 시설 부족(4.6%), 교사학보의 어려움(3.6%)순이며, 보육교사 3급은 원아모집(4.1%), 재정 부족(2%), 교사 확보의 어려움(2%), 시설 부족(2%)순으로 지각하고 있다.</p>

결국 보육교사 유형 변인에서는 원아모집, 재정 부족, 시설 부족 측면에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 향후 보육시설 경영자는 원아 모집이나 재정 및 시설 측면에서 개선시킬 수 있는 정책 개발을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2) 교사의 개인적 배경변인에 따른 민간어린이집 교사확보 측면에서 문제점

교사의 개인 배경변인에 따른 민간어린이집 교사확보 측면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표 18>과 같다.

<표 18> 교사의 개인적 배경변인에 따른 어린이집 교사확보 측면의 문제점(%)

	구 분	봉급 수준	시설수준	타기관과의경쟁	인지도여부	교사부족	x²/p
.11	남	0(0)	1(0.45)	1(0.45)	0(0)	0(0)	x ² =5.3311
성 별	여	125(56.82)	43(19.55)	22(10)	13(5.91)	15(6.82)	p=0.2550 df=4
	20대	58(27.10)	19(8.88)	10(4.67)	6(2.80)	4(1.87)	x ² =7.6302
연 령	30대	42(19.63)	11(5.14)	4(1.87)	5(2.34)	5(2.34)	p=0.4704
	40대	23(10.75)	12(5.61)	8(3.74)	2(0.93)	5(2.34)	df=8
	고등학교	21(9.55)	11(5.00)	4(1.87)	2(0.91)	3(1.36)	
학 력	전문대학	68(30.91)	23(10.45)	8(3.64)	7(3.18)	8(3.64)	x ² =8.3883
약 덕	대학교	33(15.00)	8(3.64)	10(4.55)	3(1.36)	4(1.82)	p=0.7541 df=12
	대학원	3(1.36)	2(0.91)	1(0.45)	1(0.45)	0(0)	1/6
	유아교육	57(25.91)	17(7.73)	7(3.18)	8(3.64)	10(4.55)	TU
	사회복지	20(9.09)	8(3.64)	3(1.36)	1(0.45)	0(0)	0
전 공	아동학	13(5.91)	6(2.73)	4(1.82)	1(0.45)	2(0.91)	$x^2 = 29.0613$
신 중	가정학	3(1.35)	0(0)	1(0.45)	1(0.45)	1(0.45)	*p=0.0566 df=20
	간호학	0(0)	0(0)	0(0)	0(0)	1(0.45)	ar 20
	기 타	32(14.55)	13(5.91)	8(3.64)	2(0.91)	1(0.45)	
	1년 미만	26(11.87)	12(5.48)	5(2.28)	3(1.37)	4(1.83)	
	1-2년 미만	29(13.24)	11(5.02)	3(1.37)	3(1.37)	0(0)	x ² =18.3886
경 력	3-5년 미만	27(12.33)	5(2.28)	4(1.83)	2(0.91)	2(0.91)	p=0.3016
	5-10년 미만	28(12.79)	11(5.02)	7(3.20)	4(1.83)	3(1.37)	df=16
	10년 이상	15(6.85)	5(2.28)	4(1.83)	0(0)	6(2.74)	
	보육교사 1급	66(33.50)	25(12.69)	13(6.60)	5(2.54)	10(5.08)	x ² =7.8685
유 형	보육교사 2급	35(17.77)	10(5.08)	4(2.03)	6(3.05)	3(1.52)	p=0.4464
	보육교사 3급	8(4.06)	6(3.05)	4(2.03)	1(0.51)	1(0.51)	df=8
	교 사	112(51.38)	37(16.97)	18(8.26)	11(5.05)	11(5.05)	x ² =4.7754
직 위	시설장	13(5.96)	5(2.29)	5(2.29)	2(0.92)	4(1.83)	p=0.3111 df=4

*p <.05

<표 18>에 의하면, 주변도시와 비교할 때 교사확보 측면에 나타난 문제점은 전공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p<.05). 먼저유아교육 전공자는 봉급 수준(25.9%), 시설 수준(7.7%), 교사 부족(4.6%), 인지도 여부(3.6%), 타 기관과의 경쟁(3.2%) 순으로 나타났으며, 기타 전공자는 봉급 수준(14.6%), 시설 수준(5.9%), 타 기관과의 경쟁(3.6%), 인지도 여부(0.9%), 교사 부족(0.5%) 순이다. 사회복지 전공자는 봉급 수준(9.1%), 시설 수준(3.6%), 타 기관과의 경쟁(1.4%), 인지도 여부(0.5%)순이다. 아동학 전공자는 봉급 수준(5.9%), 시설 수준(2.7%), 타 기관과의 경쟁(1.8%), 교사 부족(0.9%), 인지도 여부(0.5%) 순으로 나타났다.</p>

상기에서 각 전공변인은 일반적으로 교사확보 측면에서 봉급 수준, 보육 시설의 수준, 타 기관과의 경쟁에서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향후 보육시설 종사자들의 처우 및 환경 조건을 개선해야 됨을 시사하고 있다.

HANSUNG UNIVERSITY

3) 교사의 재정 지원에 대한 불만족 사항 공적 개인 배경변인에 따른 보육시설

교사의 개인배경 변인에 따른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공적·재정지원에 대한 불만족 사항의 인식의 차이는 <표 19>와 같다.

<표 19> 교사의 개인적 배경변인에 따른 어린이집 공적재정에 대한 불만족 사항

	7 H	불확실한	지원	부정	행정	정부지원	2 / /10
	구 분	재정운영	부족	기적지원	절차상문제	시설과 차이	x²/p/df
성 특	남	0(0)	1(0.45)	1(0.45)	0(0)	0(0)	x ² =10.7645 *p=0.0293
′8' ₹	여	77(35.00)	65(29.55)	9(4.09)	13(5.91)	54(24.55)	*p=0.0293 df=4
	20대	35(16.36)	29(13.55)	6(2.80)	2(0.93)	25(11.68)	x ² =12.5785
연 력	성 30대	28(13.08)	20(9.35)	3(1.40)	5(2.34)	11(5.14)	p=0.1272
	40대	12(5.61)	15(7.01)	1(0.47)	6(2.80)	16(7.48)	df=8
	고등학교	16(7.27)	12(5.45)	4(1.82)	1(0.45)	8(3.64)	x ² =7.4970
학 달	전문대학	40(18.18)	34(15.45)	3(1.36)	6(2.73)	31(14.09)	p=0.8231
4 -	대학교	19(8.64)	18(8.18)	3(1.36)	5(2.27)	13(5.91)	
	대학원	2(0.91)	2(0.91)	0(0)	1(0.45)	2(0.91)	df=12
	유아교육	37(16.82)	26(11.82)	7(3.18)	6(2.73)	23(10.45)	
	사회복지	12(5.45)	10(4.55)	0(0)	0(0)	10(4.55)	x^2 =22.5028
전 등	아동학	10(4.55)	8(3.64)	0(0)	0(0)	8(3.64)	p=0.3139
- <u></u> (가정학	2(0.91)	1(0.45)	0(0)	2(0.97)	1(0.45)	df=20
	간호학	0(0)	1(0.45)	0(0)	0(0)	0(0)	α1-20
	기 타	16(7.27)	20(9.09)	3(1.36)	5(2.27)	12(5.45)	
	1년 미만	18(8.22)	17(7.76)	2(0.91)	2(0.91)	11(5.02)	
	1-2년 미만	20(9.13)	8(3.65)	3(1.37)	2(0.91)	13(5.94)	$x^2=11.6006$
경로	4 3-5년 미만	17(7.76)	11(5.02)	1(0.46)	2(0.91)	9(4.11)	p=0.7710
	5-10년 미만	13(5.94)	21(9.59)	3(1.37)	4(1.83)	12(5.48)	df=16
	10년 이상	9(4.11)	8(3.65)	1(0.46)	3(1.37)	9(4.11)	
	보육교사 1급	42(21.32)	36(18.27)	4((2.03)	9(4.57)	28(14.21)	x ² =10.3623
유형	형 보육교사 2급	25(12.69)	13(6.60)	4(2.03)	2(1.02)	14(7.11)	p=0.2405
	보육교사 3급	3(1.52)	10(5.08)	2(1.02)	1(0.51)	4(2.03)	df=8
직 4	교사	70(32.11)	55(25.23)	10(4.59)	10(4.59)	44(20.18)	$x^2=5.1014$ p=0.2771
~ 1	시설장	7(3.21)	9(4.13)	0(0)	3(1.38)	10(4.59)	df=4

<표 19> 의하면, 민간어린이집의 공적 재정 지원에 대한 불만족 사항은 성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p<.05). 민간어린이집의여교사들은 불확실한 재정 운영(35%), 자원 부족(29.6%), 정부지원 시설과차이(24.6%), 행정 절차상의 문제(5.9%), 부정기적 지원(4.1%) 순으로 나타났다.</p>

이러한 결과는 향후 민간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시설장은 투명한 재정 운영이 필요하며, 보건복지부에서 다양한 재정 지원이 요망됨을 알 수 있 다.



4) 교사의 개인 배경변인에 따른 보육시스템과 관련된 행정적 지원 및 개선 사항

교사의 개인 배경 변인에 따른 보육시스템과 관련된 행정적 지원 및 개선 사항의 인식의 차이는 <표 20>과 같다.

<표 20> 교사의 개인적 배경변인에 따른 보육시스템의 행정적 지원 및 개선사항

	구 분	전문성 신장	신분 보장	지원 확대	프로그램 개발	양성.관리 체계강화	x²/p/df
 성 별	남	1(0.45)	0(0)	0(0)	1(0.45)	0(0)	x ² =4.9498 p=0.2925
78 월	여	65(29.55)	51(23.18)	66(30)	20(9.09)	16(7.27)	df=4
	20대	24(11.21)	30(14.02)	30(14.02)	9(4.21)	4(1.87)	$x^2=21.4973$
연 령	30대	28(13.08)	15(7.01)	11(5.14)	8(3.74)	5(2.34)	**p=0.0059
	40대	14(6.54)	6(2.80)	22(10.28)	2(0.93)	6(2.80)	df=8
	고등학교	17(7.73)	7(3.18)	11(5.00)	2(0.91)	4(1.82)	$-x^2=10.6839$
학 럭	전문대학	35(15.91)	29(13.18)	32(14.55)	11(5.00)	7(3.18)	
थ भ	대학교	11(5.00)	14(6.36)	20(9.09)	8(3.64)	5(2.27)	p=0.5562
	대학원	3(1.36)	1(0.45)	3(1.36)	0(0)	0(0)	df=12
	유아교육	31(14.09)	22(10)	28(12.73)	9(4.09)	9(4.09)	
	사회복지	7(3.18)	5(2.27)	17(7.73)	2(0.91)	1(0.45)	$x^2 = 21.0781$
전 공	아동학	10(4.55)	5(2.27)	8(3.64)	1(0.45)	2(0.91)	p=0.3926
건 0	가정학	1(0.45)	1(0.45)	3(1.36)	1(0.45)	0(0)	Ť
	간호학	1(0.45)	0(0)	0(0)	0(0)	0(0)	df=20
	기 타	16(7.27)	18(8.18)	10(4.55)	8(3.64)	4(1.82)	
	1년 미만	20(9.13)	17(7.76)	8(3.65)	4(1.83)	1(0.46)	
	1-2년 미만	14(6.39)	10(4.57)	13(5.94)	4(1.83)	5(2.28)	$x^2 = 27.4828$
경 력	3-5년 미만	14(6.39)	9(4.11)	11(5.02)	5(2.28)	1(0.46)	*p=0.0364
	5-10년 미만	11(5.62)	12(5.48)	23(10.50)	4(1.83)	3(1.37)	df=16
	10년 이상	7(3.20)	3(1.37)	10(4.57)	4(1.83)	6(2.74)	
	보육교사 1급	39(19.80)	25(12.69)	35(17.77)	10(5.08)	10(5.08)	$x^2=5.9162$
유 형	보육교사 2급	17(8.63)	19(9.64)	15(7.61)	5(2.54)	2(1.62)	p=0.6566
	보육교사 3급	8(4.06)	4(2.03)	4(2.03)	3(1.52)	1(0.51)	df=8
7) ()	교 사	61(27.98)	47(21.56)	52(23.85)	18(8.26)	11(5.05)	x ² =11.2030
직 위	시설장	5(2.29)	3(1.38)	13(5.61)	3(1.38)	5(2.29)	*p=0.0244 df=4

*p <.05 **p <.01

<표 20>에 의하면, 보육시스템과 관련된 행정적 지원 및 개선 사항의 인식차이는 연령(p<.01), 경력(p<.05), 직위(p<.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먼저 연령은 ① 20대는 신분 보장과 지원 확대(14.02%), 전문성 신장(11.2%), 프로그램 개발(4.2%), 양성·관리체계 강화(1.9%) 순으로 나타났다. ② 30대는 전문성 신장(13.1%), 신분 보장(7%), 지원 확대(5.1%), 프로그램 개발(3.7%), 양성·관리체계 강화(2.3%)순이며, ③ 40대는 지원 확대(10.3%), 전문성 신장(6.5%), 신분 보장과 양성·관리체계 강화가 각각(2 8%), 프로그램 개발(0.9%) 순으로 나타났다.

젊은 교사 일수록 신분 보장, 전문성 신장에 더 높은 인식을 한 반면, 40대 교사는 행정적 지원 확대에 높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력 변인은 ① 1년 미만은 전문성 신장(9.1%), 신분 보장(7.8%), 지원확대(3.7%), 프로그램 개발(1.8%), 양성·관리체계 강화(0.5%) 순이며, ② 1~2년 미만은 전문성 신장(6.4%), 지원 확대(5.9%), 신분 보장(4.6%), 양성·관리체계 강화(2.3%), 프로그램개발(1.8%) 순으로 나타났다. ③ 3~5년 미만은 전문성 신장(6.4%), 지원 확대(5%), 신분 보장(4.1%), 프로그램개발(2.3%), 양성·관리체계 강화(0.5%) 순이다. ④ 5~10년 미만은 지원확대(10.5%), 신분 보장(5.5%), 전문성 신장(5.6%), 프로그램 개발(1.8%), 양성·관리체계 강화(1.4%) 순으로 나타났다. ⑤ 10년 이상은 지원확대(4.6%), 전문성 신장(3.2%), 양성·관리체계 강화(2.7%), 프로그램 개발(1.8%), 신분 보장(1.4%)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5년 미만의 교사는 전문성 신장과 신분 보장에 높은 인식을 했으며, 이에 반해 5~10년미만 교사는 지원확대에 높은 반응을 나타냈다. 그리고 10년 이상 된 교사는 지원확대, 전문성 신장, 양성·관리체계 강화에 높은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V. 요약 및 결론

1.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민간어린이집의 운영 실태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여, 보육의 질적 향상에 도움이 되는 개선점을 파악함으로써 민간어린이집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하는 데 있다.

본 연구를 실행하기 위하여 관련된 문헌과 논문을 통하여 이론적 기초를 마련한 후 서울특별시 G구에 위치한 어린이집에 재직 중인 교사 280명을 연구의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하여 사용한 측정도구는 복지변인을 측정하기 위하여 임홍수(2002)의 질문지를 수정 및 보완해서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자료 처리는 SPSS 1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통계 처리의 유의 수준은 각각 p<.05, p<.01, p<.001에서 분석하였다. 연구문제 1과 2는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문제 3은 x^2 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나타난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의 배경변인에 따라서 민간어린이집의 교육프로그램 복지요 인의 차이를 살펴보면 성별, 연령, 학력, 전공, 경력, 유형, 직위에서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못하였다. 그러나 직위에서는 영양 변인에 서 시설장이 교사보다 높게 나타났다. 건강 변인과 안전 변인에서도 시설 장이 교사보다 높게 나타났다.

둘째, 교사와 시설장 배경변인(성별, 연령, 학력, 전공, 경력, 자격증 유형)에 따라서 민간어린이집의 교육프로그램 행·재정요인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성별, 연령, 학력, 전공, 경력, 유형, 직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못하였다.

셋째, 민간어린이집 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점 분석에 관한 결과를 살펴보면 보육시설 운영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유형에서 통계적으로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보육교사 1급은 원아모집, 재정 부족, 시설부족, 교사확보의 어려움 순으로, 보육교사 2급은 원아모집, 재정 부족, 시

설 부족, 교사확보의 어려움 순으로, 보육교사 3급은 원아모집, 재정 부족, 교사확보의 어려움, 시설 부족 순으로 지각하고 있었다. 이에 반하여 주변 도시와 비교할 때 교사확보 측면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전공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먼저 유아교육 전공자는 봉급 수준, 시설수준, 교사 부족, 인지도 여부, 타 기관과의 경쟁 순으로 나타났으며, 기타전공자는 봉급 수준, 시설 수준, 타 기관과의 경쟁, 인지도 여부, 교사부족순이다. 사회복지 전공자는 봉급 수준, 시설 수준, 타 기관과의 경쟁, 인지도 여부 군이다. 아동학 전공자는 봉급 수준, 시설 수준, 타 기관과의 경쟁, 교사 부족, 인지도 여부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보육시설에 대한 공적 재정 지원에 대한 불만족 사항은 성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보육시설의 여교사들은 불확실한 재정 운영, 지원 부족, 정부 지원 시설과의 차이, 행정 절차상의 문제, 부정기적 지원 순으로 나타났다.

넷째, 보육시스템과 관련된 행정적 지원 및 개선 사항의 인식의 차이는 연령, 경력, 직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연령에서 20대는 신분 보장과 지원 확대, 전문성 신장, 프로그램 개발, 양성·관리체계 강화 순으로 나타났다. 30대는 전문성 신장, 신분 보장, 지원 확대, 프로그램 개발, 양성·관리체계 강화, 순이며, 40대는 지원 확대, 전문성 신장, 신분 보장과 양성·관리체계 강화, 프로그램 개발 순으로 나타났다. 경력 변인에서 1년 미만은 전문성 신장, 신분 보장, 지원 확대, 프로그램 개발, 양성관리 체계 강화 순이며, 12년 미만은 전문성 신장, 지원 확대, 신분보장, 양성·관리체계 강화, 프로그램 개발 순으로 나타났다. 3~5년 미만은 전문성 신장, 지원 확대, 신분보장, 양성·관리체계 강화, 프로그램 개발 순으로 나타났다. 3~5년 미만은 전문성 신장, 지원 확대, 신분보장, 양성·관리체계 강화, 프로그램 개발 나타났다. 10년 이상은 지원 확대, 전문성 신장, 양성·관리체계 강화, 프로그램 개발 나타났다. 10년 이상은 지원 확대, 전문성 신장, 양성·관리체계 강화, 프로그램 개발 나타났다. 10년 이상은 지원 확대, 전문성 신장, 양성·관리체계 강화, 프로그램 개발, 신분보장 순으로 나타났다.

2. 결 론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고자한다. 첫째, 보호·영양·건강·안전 변인에서 시설장이 교사보다 높은 인식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영유아에 대한 안전 및 건강, 영양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직접 수행하고 있는 교사들도 영유아의 안전과 건강에대한 관찰, 예방접종, 개인 위생관리, 질병 예방, 놀이기구 안전관리, 건강문제, 영양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과 능력과 인식을 갖추어야 한다는 경각심을 일깨워 주고 있다.

둘째, 보육시설 운영 상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보면, 전체적으 로 보육교사가 원아모집, 재정 부족, 시설 부족, 교사 확보의 어려움에 대 하여 반응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2015년부터 원아가 급격히 감소 하는 현상이 도래하기에(보건복지부, 2006) 충분히 예상될 수 있는 문제점 이었다. 아울러 재정 및 시설 부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비상재해 대비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한 임대시설 등 구조적인 요인으로 서울형 어린 이집에 진입하지 못하는 민간 및 가정 보육시설 운영에 대한 추가적인 논 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서울형 어린이집 운영 수준과 교사확보 측면에서 나타난 문제점으로 유아교육 전공자, 기타 전공자, 사회복지 전공자, 아동 학 전공자들은 봉급 수준, 시설 수준, 타 기관과의 경쟁 순으로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보육시설에서의 재정 운영 측면에서 볼 때, 인건비 미지원시설과 서울형 어린이집이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 어, 부모 부담금도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다(서울시보육시설연합회, 2009). 따라서 이러한 교사들의 인건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영유아 가 이용하는 보육시설이 국공립보육시설이든 민간보육시설이든 관계없이 동일한 연령의 영유아 1인당 보육비용을 동일화하여 서비스 수준을 향상 시키고자 하는 '서울형어린이집'정책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향후 이러한 정책을 대폭적으로 실시하여 교사의 봉급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 력해야 될 것이다.

셋째, 보육시스템과 관련된 행정적 지원 및 개선 사항으로 연령에서 20 대는 신분보장에서, 30대는 전문성 신장에서, 40대는 재정적 지원확대 측면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연령이 낮을수록 처우 개선이나 직장의 근무형태에 따른 신장보장을 우선시하며, 30대는 신분이 어느 정도정착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보육교사로서 자질을 함양하는데 관심이 집중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40대는 보육시설 운영자가 증가하는 정부의대폭적인 재정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시설에 대한공적 재정지원에 나타난 문제점은 불확실한 재정 운영, 당국의 지원 부족,정부지원 시설과의 차이 순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시설장은 조직 구성원들에게 열린 재정 운영으로 공적 재정 지원을 분명하게 밝히면서 서울형 어린이집 운영 정책을 대폭적으로 수용하여 당국으로부터 지원금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정부지원시설과의 민간 어린이집 시설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3. 제 언

첫째, 본 연구는 민간어린이집의 실태 및 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로 어린이집 교사 및 시설장을 대상으로 설문지로 분석하였다. 추후 연구에서는 좀 더 심층적인 질문과 관찰을 통해 민간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태도와 방향성을 조사·분석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 G구를 중심으로 교사 및 시설장의 인식도를 중심으로 분석하였지만 추후 연구에서는 지역적인 특성을 초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역에서의 어린이집 운영 실태를 평가 및 분석하여 통합적인 대안을 제시할 후행 연구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

참고문헌

국내문헌

- 권순영(1996). "24시간 보육시설의 운영 실태에 관한연구". 숭실대학교 통일정책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모(2001). "영유아보육 정체성, 한국영유아보육 전문직의 확립방안". 한국영유아보육학회 세미나 자료집.
- 김익균·정원주(2000). 『보육학 개론』. 서울: 대학출판사.
- 김진이(2000). "보육욕구조사에 의한 아동보육프로그램의 방향". 한국사회 복지관 제42호.
- 김기환·김향숙(2001). "포괄적 보육프로그램 실천에서 사회복지사의 역할". 부산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나정 외(2002). 『미국의 유아교육과 보호정책』.서울: 양서원.
- 나정 외(2002). 『영국의 유아교육과 보호정책』.서울: 양서원.
- 보건복지부(2001). 『보육사업안내』. 서울: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2007). 『보육사업안내』. 서울: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2008). 『보육사업안내』. 서울: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2009). 『보육사업안내』. 서울: 보건복지부.
- 박경애(2006). "학부모의 유아교육기관 선택 기준에 관한 연구". 경원대학 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정숙(1999). "어린이집 운영의 질 향상". 단국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 위논문.
- 신재흡(2009). 『현직 교사를 위한 현장교육연구의 이론과 실제』. 서울: 공 동체.
- 신재흡(2008). "변혁적지도성과 조직헌신이 조직시민 행동에 미치는 영향 분석". 교육행정학연구 제26권 제1호. 서울: 한국교육 행정학회.
- 송주미(1998). "한국 아동복지관의 변천과정 연구". 숙명여자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근주(2004). "어린이집 자율 장학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영석(1996). "영아보육 프로그램의 활성화 방안". 서울특별시 보육시설 연합회. 세미나자료.
- 이은화 외(2001). 『한국유아교육의 쟁점과 과제』. 서울: 양서원.
- 이숙희(1999). "심성계발 프로그램이 유아의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경기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윤희(1993). "민간보육시설의 운영 실태와 개선 방향". 부산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홍수(2002). "영·유아보육 프로그램의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동의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재택(1985). 『유치원운영관리』. 서울: 창지사.
- 영유아보육법(2001). 『보육사업안내』. 서울: 보건복지부.
- 전기옥(2004). "유치원 에듀-케어 교육 실태와 개선방안".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성혜(2000). "보육시설에서의 부모교육 프로그램 실태 및 활성화 방안". 사회복지연구 제10집 부산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 최귀영(2001). "민간어린이집의 운영 실태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교육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미현 외(1996). 『영유아보육론』. 서울: 창지사.

- Arend, R., Gove, F., & Sroufe, L.(1979). A Continuity of Individual

 Adaptation from Infancy to Kindergarten: A Predictive Study of
 Ego-resiliency and Curiosity in Preschoolers, *Child Dvelopment*,
 Vol 50.
- Belsky, J., & Steinberg, L.(1978). The Effect of Day Care: A Critical, Child Development, Vol 49.
- Caldwell, B.(1977). Child Development and Social Policy, Current Issues in Child Development, ed. M. Grinmmett. Washington, D.C.: 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ducation of Young Children.
- Caldwell, B. (1984). What is Quality Child Care?, Young Children Vol.39(3).
- Decker, C. A., & Decker, J. R.(1984). Planning and Administering Early Childhood Programs(3rd ed), Columbus, Ohio: Merrill.
- Douglas, J., & Blomfield, J.(1958). Children Under Five, London: Allen and Unwin.
- Endsley. R., & Bradbard, M.(1981). Quality Daycare a Handbook of Choices for Parents and Caregivers, N. J. Cliffs, Prentice-hall Inc.
- Fowler, W., & Khan, N.(1974). The Later Effects of Infant Group Care: A Fellow Up Study. Toronto Institute for Studies in Education.
- Fredericksen. H.(1948). The Child and His Welfare, San Francisco: Freeman Co.
- Hoffman, L.(1979). Maternal Employment: (1979), American Psychologist 34, No. 10.
- Holloway. S. D., & Reichhart, M.(1988). The Relationship of Day Care Quality to Children's Free-Play Behavior and Problem-

- solving Skills.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3.
- Honing. A. A.(1989). Quality Infant / Toddler: are there Magic Care Giving Recipes?, *Young Children*, Vol 44(4).
- Kister, M. E.(1970). "The Good Life" for Infants and Toddlers.Washington, D. C.: 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ducation of Young Children.
- Khanna. P., & Ackerman-Ross, S.(1989). The Relationship of High Quality Day Care to Middle-Class 3-year-old' Language Performance,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4.
- Konton, S., J & Frene, R.(1987). Predictors of Quality and Children's Development in Daycare. In D. Phillips(ed). Quality Indictors of Child's Care. Washington, D. C: NAEYC.
- McCartney, K.(1984). Effects of Quality of Day Care Environment on Children's Language. *Development Psychology*, Vol 20.
- Project Head Start.(1965). Community Action Program, Washington D. C.
- Schwarz J. C. et al.(1983). "Center, Sitter and Home day Care Before Age Two", A Report on the First Bermuda Infant Care Study, L. A.: ATA.
- Vandell, D. L., & Powers. C.(1983), Day Care Quality and Children's Free Play Activitie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Vol 53.

인터넷 자료

http://www.nanet.go.kr(국회도서관)

http://www.educare.or.kr(중앙보육정보센터)

http://www.moleg.go.kr(법제처)

http://childcare.kihasa.re.kr(영유아보육발전을 위한 보육인 토론마당)

http://children.seoul.go.kr(서울특별시보육정보센터)

http://www.mohw.go.kr(한국보육시설연합회)

http://www.kwdi.re.kr(한국여성개발원)



부록

설문지

주제: 민간어린이집의 실태 및 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

안녕하십니까?

미래를 이끌어갈 영유아를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선생 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설문지는 서울시에 위치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아동교육에 대한 복지요인과 행·재정 요인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질높은 민간어린이집 운영 방안을 마련 하고자 설문지를 제작하였습니다.

본 설문지는 어린이집 실태 및 개선 방향에 관한연구의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작성하신 내용은 연구자료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 본 설문지에 응답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귀원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009년 8월

한성대학교 교육대학원 유 아 교 육 전 공

연 구 자 : 조 미 자

I. 다음은 귀하의 인적 사항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입니다.
☞ 각 문항의 해당되는 한 가지 문항에만 V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 () ② 여()
2. 귀하는 어느 연령층에 속하십니까? ① 20~29세() ② 30~39세() ③ 40~49세()
3. 귀하의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중퇴도 졸업으로 간주함)? ① 고등학교() ② 전문대학() ③ 대학교 () ④ 대학원 ()
4. 귀하의 전공은 무엇입니까? ① 유아교육() ② 사회복지() ③ 아동학() ④ 가정학() ⑤ 간호학() ⑥ 기타()
5. 귀하는 이 기관에 종사하신 경력은 얼마나 되셨습니까? ① 1년 미만() ② 1~3년 미만() ③ 3~5년 미만() ④ 5~10년 미만() ⑤ 10년 이상()
6. 귀하가 소지하고 있는 보육교사 자격증의 유형은 무엇입니까? ① 1급() ② 2급() ③ 3급()
7. 귀하는 민간어린이집의 근무하는 직위는 무엇입니까? ① 교사() ② 시설장()

I. 복지요인 (보호, 영양, 건강, 안전)

☞ 각 문항의 해당되는 한 가지 문항에만 V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교육프로그램의 기본원칙 중 보호에 관한 질문입니다.

		매우	조금	보통	약간	전혀
		그렇다	그렇다	이다	아니다	아니다
1	아이들에게 생활 습관을 기					
1	를 수 있도록 지도한다.					
2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충분					
<i>\(\alpha \)</i>	한 공간이 있다.					
3	놀이기구 사용 시 안전에					
J	관한 교육을 실시한다.					
1	아이들은 기관에서 운행하					
4	는 차량을 타고 통원한다.					_
E	아이들에게 교통안전에 관			7		
5	한 교육을 실시한다.					

⊙ 다음은 교육프로그램의 기본원칙 중 영양에 관한 질문입니다.

		매우	조금	보통	그런	그렇지
		그렇다	그렇다	이다	편이다	않다
	급식 및 간식은 5가지 기					
6	초식품군이 골고루 포함되					
	어 있다.					
7	식품은 미리 계획된 식단					
1	표에 의하여 구입한다.					
	식품은 값싸고 영양가 있					
8	는 현지 생산물을 최대한					
	활용한다.					
	식품을 위생적으로 보관・					
9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이 있					
	다.					

		31.0		., =	71	71 _1
		매우	조금		그런	그렇지
		그렇다	그렇다	이다	편이다	않다
	그릇을 깨끗이 씻고 소독					
10	하여 항상 청결하게 유지					
	한다.					
	급식 및 간식은 안락하고					
11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실					
	시한다.					
	아이들에게 올바른 식습관					
12	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한					
	다.					
	아동들이 좋아하는 음식에					
13	관한 정보를 입수하여 반					
	영한다.					_
	기관에서 제공되는 급식					
14	및 간식의 내용을 알려준		()			
	다.	111	/ =		01	

다음은 교육프로그램의 기본원칙 중 건강에 관한 질문입니다.

		매우	조금	보통	그런	그렇지
		그렇다	그렇다	이다	편이다	않다
	아이들이 놀거나 잠을 잘					
15	때 청결 상태를 점검・유					
	지한다.					
16	장난감 및 개인물품의 청					
10	결상태를 점검 • 유지한다.					
17	화장실의 청결상태를 유지					
17	하며 항상 쾌적하게 한다.					
10	아이들에게 쾌적한 실내					
18	환경을 제공한다.					

◉ 다음은 교육프로그램의 기본원칙 중 안전에 관한 질문입니다.

		I				
		매우	조금	보통	그런	그렇지
		그렇다	그렇다	이다	편이다	않다
10	세면장에는 깨끗한 수건,					
19	비누 등이 정리되어 있다.					
00	아이들은 화장실 사용 후,					
20	음식 먹기 전 손을 씻는다.					
	필요할 때 갈아입을 속옷					
21	등이 사물함에 준비되어					
	있다.					
22	소독약, 탈지면, 반창고 등					
22	구급약품이 준비되어 있다.					
വ	매일 청소와 환기를 하고					
23	정기적으로 소독을 한다.					
0.4	기관의 안전과 파손 여부				1	
24	를 정기적으로 살핀다.					
OF.	소화기 등의 안전 장비가					
25	구비되어 있다.					
	기관은 안전사고 예방을		7 F	R		
26	위해 보험에 가입되어 있	(/ L	17	\mathcal{I}	
	다.					

Ⅱ. 행·재정 요인

● 다음은 교육프로그램의 기본 원칙 중 행·재정에 관한 질문입 니다.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다
	영ㆍ 유아 보육법 시행 규					-
27	칙에 의한 교육비의 표준					
	단가로 시행한다.					
	우리지역 교육관련 행정					
	공무원들은 기관의 운영이					
28	나 교육에 관한 지식과 정					
1	보를 어느 정도 갖고 있					
	다.					
	귀하는 주변 도시와 비교					
29	할 때 시설장은 전문성을					
	갖고 있다.	111	7 🗀	\Box	CI	$T \setminus$
	귀하는 주변도시와 비교	$\langle \cdot \cdot \rangle$		K	\mathcal{C}	
30	할 때 부모들은 유아교육					
30	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					
	다.					
	귀하는 주변 도시와 비교					
31	할 때 공적 재정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32. 귀 시설을 운영하는데 운영상의 어려움을 서술한 것으로 제일 어렵다고 생각되는 번호 4개 중 1가지만 V표를 하시오.

- ① 원아모집() ② 재정 부족() ③ 교사 확보의 어려움()
- ④ 시설 부족()

으로 해당되는 1 가지만 V 표 하시오.
① 봉급 수준() ② 시설 수준() ③ 타 가관과의 경쟁()
④ 인지도 여부() ⑤ 지역 내 교사 부족()
34. 만약 공적 재정지원에 만족하지 않는 이유를 서술한 것으로 만족하지
않는 1 가지만 V 표 하시오.
① 행정 측의 불확실한 재정 운영() ② 필요한 부분 지원 부족()
③ 부정기적인 지원() ④ 행정 절차상의 문제()
⑤ 정부 지원 시설과의 차이()
35. 귀하께서는 현재 서울시 보육과 관련하여 행정적 지원이나 개선점을
서술한 것으로 해당 되는 번호 1 가지만 V 표 하시오.
① 보수교육을 통한 전문성 신장() ② 교사의 신분 보장()
③ 재정적 지원 확대() ④ 양질의 교재 및 보육프로그램 개발()
⑤ 보육인력 양성 및 관리체계 강화()
36. 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부딪치는 애로 사항들은 무엇인지 좋
은 의견 있으시면 평소의 견해를 글로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

33. 귀하는 주변도시와 비교할 때 교사확보에 가장 어려운 점을 서술한 것

- 감사합니다-

ABSTRACT

A Study on the Realities of Private Nursery and the Direction of Its Improvement

Jo, Mi Ja Major in Childhood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Hansu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ntribute to the smooth operation of the private nursery by eliciting the problem from the analysis of the operating realities of the private nursery and identifying the contributing factors to the qualitative improvement of upbringing.

To attain the goal of this study, it established the theoretical foundation through related literature and articles and then conducted the questionnaire research for 280 nursery teachers working at the nurseries located in the 'G' district of Seoul. The measurement Lim instrument used for this study was Heung-soo's(2002) questionnaire modified and complemented to measure the welfare factors. Data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the SPSS 12.0 program, and at the significance level of p<.05, p<.01 and p<.001. Univariate regression was conducted for the research question 1 and 2, and chi-square test was conducted for the research question 3.

First, the facility head showed the high level of perception about protection · health · safety factors than the counterpart teachers. This

result bring to their senses the teachers personally performing a role as manager for the safety, health and nutrition of infants that they should have the skill. ability and consciousness to resolve such problems as observation of their safety and health, preventive vaccination, personal salutation, health and nutrition.

Second, in light of the consciousness of the problem occurring in the operation of the daycare center, daycare teachers are responding to the invitation of nursery school children, financial deficit, facility shortage, difficulty in securing teachers overall. To resolve the problem of the labor cost for teachers, it is thought that it is desirable that the daycare institutions, national and public or private, in which infants are enrolled, have the policy of 'Seoul-type nursery' aiming to improve the level of service by equalizing the daycare expenses per infant of the same age. Efforts should be made to improve the level of teacher's salary by carrying out this policy on a large scale in the future.

Third, the facility head operating the daycare institution would need to complement the subsidy from the authorities by accepting the operating policy of the Seoul-type nursery while clearly disclosing pubic financial support through its organization members through open financial operation. Efforts should be made to overcome the difference between government-supported institution and private nursery facility through this process.